

201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발 간 등 록 번 호
인천교육-2010-0079

201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차 례

제1장

201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3

I. 목 적	5
II. 적용대상	5
III. 학교회계 운용 일반 사항	5
IV. 학교회계 예산 과정	7
V.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기준	11
VI. 행정사항	29

제2장

2011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기준

33

I. 기본방향	35
II. 2011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편성기준	35

제3장

예산 편성 기준 단가

39

I.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비	41
II.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는 기준 경비	41
III. 기타 단위 단가	43

제4장

예산과목 체계 및 과목 내용

45

I.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47
II.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56

제5장

각종서식

95

부록 1

주요 변동내역

157

부록 2

학교회계 관계 법령

165

제 1 장



201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I. 목 적

본 지침은 「인천광역시 공립학교 회계 규칙」 제9조에 의거 학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적용대상

1. 공립 유치원 · 초 · 중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 · 운영되는 학교회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설유치원은 학교회계제도를 준용하여 운영한다)
2.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자율학교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교직원보수(교원연구비, 제수당) 및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사항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III. 학교회계 운용 일반 사항

1. 학교회계의 설치단위

- 가. 학교회계는 공립 유치원 · 초 · 중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별로 설치한다.
- 나. 통합학교(연평 · 덕적 · 대청 · 서도 초 · 중 · 고)와 병설학교(백령 · 교동 중 · 고)는 학교급별 회계를 분리하여 설치 · 운영한다.
- 다. 분교 및 분교장의 경우 별도로 회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본교에 단일 회계를 설치 · 운영한다.

라.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운영한다.

마. 각종학교(인천산업정보학교)는 학교회계제도를 준용하여 운용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여 관할청에 보고한다.

1) 관할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역할을 대행한다.

2) 관할청에서는 예산안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예산안 접수 15일 안에 개선 통보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예산안을 수리한 것으로 본다.

2.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기한

가. 회계연도는 3월 1일을 기준으로 개시하고 다음 해 2월말로 종료한다.

나. 세입·세출에 관한 사무는 3월 20일을 기준으로 폐쇄한다.

3. 금융기관의 이용

가. 학교 자율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주거래 계좌를 개설·이용한다.

나. 학교회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류자금을 등 지정 금융기관이나 타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4. 학교회계의 범위

가. 세 입

- 1) 이전수입
- 2) 자체수입
- 3) 기 타

나. 세 출

- 1) 인적자원 운용
- 2) 학생복지 / 교육격차 해소
- 3) 기본적 교육활동
- 4) 선택적 교육활동
- 5) 교육활동 지원
- 6) 학교 일반운영
- 7) 학교시설 확충
- 8) 학교재무 활동

IV. 학교회계 예산과정

1. 예산안의 편성

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시달한다.

나. 예산요구서 제출 및 예산안 편성

- 학교장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시달되면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연간 학교 운영시책 및 학교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직원으로부터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예산요구서를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제출받아 소속 교직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한다.

다. 전입금 교부계획 통보 및 예산조정

- 관할청은 단위학교의 계획적, 자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전 까지 각 학교별로 연간 배정될 학교회계 전입금의 총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확정·통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관할청으로부터 전입금 교부계획이 통지되면 학교의 연간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교직원회의 또는 부장단회의 등을 통해 예산 조정작업을 하고 예산안을 확정한다.

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예산안 제출

- 학교장은 위의 과정을 거쳐 편성한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산안 심의·확정

가. 예산안 통지

-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나. 예산심사소위원회의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 심의의 효율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심의 의견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학교장의 제안 설명

-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학교재정의 운용방향 및 예산안 편성기준에 대한 개괄사항을 설명하고, 개별적인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행정실장 또는 예산편성 실무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 교직원 의견 청취

-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 심의시 필요한 경우,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마. 증액 및 새로운 비목의 설치 금지

-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 심의 시 학교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

바. 예산확정

-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한 후 학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학교장은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

3. 예산의 집행

가. 집행의 원칙

- 확정된 예산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자금의 수급 등 학교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나. 예산 미확정시 준예산집행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다음의 정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 교직원 등의 인건비
 -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육비
 - ▶ 학교시설의 유지 관리비
 - ▶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 ▶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명시이월비, 계속비 등)

다. 성립전 예산집행

- 국가, 관할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선택적 교육수입의 수익 자부담경비는 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목적사업비전입금 등)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 할 수 있다.

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전용

1) 예산의 이용

- 세출예산은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2) 예산의 전용

- 학교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산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간 목의 금액은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목에서의 전용은 할 수 없다.

4. 결 산

가. 결산서 작성 및 제출

- 학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학교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 ▶ 예비비 사용 내역
 - ▶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 ▶ 계속비 내역
 - ▶ 이월경비 내역
 - ▶ 그 밖에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나. 결산심의의 절차

-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서 심의는 예산안 심의 절차에 준한다.

다. 결산심의 결과 통보

-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 심의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V. 예산의 편성 및 집행기준

1.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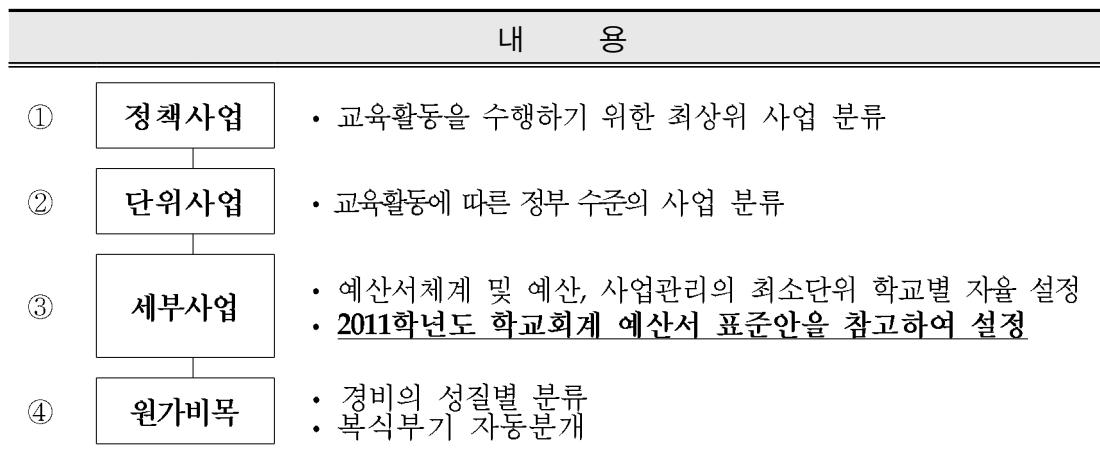
- 가. 학교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한다.
- 나.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 및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 심의가 보장되도록 한다.
- 다.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직접교육경비와 학생복지를 위한 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등 간접교육경비는 필요한 적정수준에서 편성한다.
- 라. 학교예산은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공개하여 학교경영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 마.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 예산편성·집행 및 계약·물품구매 절차 등에 대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예산의 편성 체계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으로 구분

※ 세입예산의 경우 현행과 같이 (장)-관-항-목 구조 유지

〈세출 예산의 편성 체계〉



3. 세입 예산

가. 이전수입

1) 중앙정부이전수입

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별도 통지된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 등을 말하며 보조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정산한다.

3)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가) 관할청은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단위학교에 전입금의 연간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통보한다.

나)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처리

- 목적사업비는 목적을 달성한 후의 집행잔액은 반납하지 않는다. (단, 사업 부서에서 반납을 요구한 사업비는 제외)
-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을 사용할 경우는 재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내부결재를 득한 후 집행
 - ▶ 집행잔액에 대한 본래의 사업목적, 당초 교부액, 목적달성 여부 집행 잔액 발생원인 등 기재

4) 학교회계간이전수입

가) 같은학교 이전수입

(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 학교발전기금은 원칙적으로 학교회계와 구분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로 관리하되 회계운영의 효율화,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회계로 전출한 경우에만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편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학교기업회계전입금

- 같은 학교 내 학교기업회계가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전입금

(3) 학교내타회계전입금

- 같은 학교 내 타 회계에서 이전되는 전입금(같은 학교 세입세출외현금 등)

나) 다른학교 이전수입

(1) 다른학교회계전입금

- 같은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가 전출하는 전입금(비조리교가 조리교에 납부하는 급식비 등)

5) 기타이전수입

가) 민간이전수입

(1) 기타지원금

-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부담금 수입
- 기관, 협회 또는 단체들이 교육행정기관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정보화 촉진기금 등)

나. 자체수입

1) 교수-학습활동수입

가) 기본적 교육수입

(1) 학교운영지원비(초등학교 제외)

(가) 학교운영지원비의 결정

-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수업료 인상률, 학교의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나)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

- 학교운영지원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한다.
- 전입생에게는 전입한 월의 다음월분부터 징수하고, 전출생에게는 전출하는 월분까지 징수한다.

(다) 학교운영지원비의 반환

-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학교운영지원비를 반환하여야 할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 본인이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라) 학교운영지원비의 감면

-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으며, 보상교육의 일환으로 감면대상자를 최대한 확대한다.
 - ▶ 자녀가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인천광역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의 규정 또는 인천광역시 시비장학생으로 학업에 보호를 받는 자
 - ▶ 자녀가 2인 이상 동일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그 중 1인
 - ▶ 수업료 감면기준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자 등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 특수교육대상자(일반학교 내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포함)
 - ▶ 기타 학교장이 판단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 감면자로 결정된 보호자에게는 서면으로 감면사항을 통지하고, 감면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부록 제66호 서식, 제67호 서식)

(마)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확대

- 연차별 지원 계획
 - ▶ 2011년 : 1학년 및 읍면지역 지원
 - ▶ 2012년 : 1~2학년 및 읍면지역 지원
 - ▶ 2013년 이후 : 전체 중학생 지원

※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하여 교부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별도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사업은 연차별 폐지(2011년 중학교 저소득층자녀 학비는 2~3학년에 대해서만 교육청에서 지원)

(바) 인천산업정보학교의 직업훈련과정 및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의 공동실습소에 학생 교육을 위탁하는 학교에서는 회비납부액의 일부를 위탁경비로 계상하여 위탁기관에 납부한다.

나) 선택적 교육수입

- (1) 선택적 교육수입은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 졸업앨범대금 등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학교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반드시 편입한다.
- (2) 예산편성 당시에 없던 선택적 교육수입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3) 선택적 교육수입은 각 사업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편성·관리한다.

2) 행정활동수입(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토지사용료, 시설물사용료, 제증명수수료 등의 수입

3) 자산수입

가) 자산임대수입 : 토지, 건물, 기타자산 임대수입

나) 자산매각대 :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유형자산, 무형자산 매각대

※ 토지매각, 건물매각 등 공유재산 매각 수입 : 교육비특별회계 수입

4) 이자수입 :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 이자수입

5) 적립금수입 : 적립금을 처분하여 일반 재원화 할 경우의 적립금 처분 수입

6) 금융자산회수 : 단기 임차(기타) 보증금 및 장기 임차(기타) 보증금 회수 수입

7) 잡수입

가) 제재금수입 : 변상금, 위약금, 연체료 등

나) 잡수입 : 생산물매각대, 동식물매각대, 기타잡수입

○ 재원의 발생원이 교특회계와 관련된 잡수입(교특 인건비와 관련하여 감사지적에 따른 회수금, 원어민 월세보증반환금 등)은 교특회계 세입으로 불입하여야 한다.

다) 과년도 수입

○ 전년도에 징수결정하였으나 미수납된 금액으로서 당해연도에 수납된 금액(수익자부담경비는 세입 해당 “목” 및 세출 해당 “사업”에 계상)

다. 기타

1) 전년도 이월금

가)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당해연도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

▶ 단, 수익자부담경비의 불용액에 대해서만은 이월금에 편성하지 않고 수익자부담경비의 해당 세입·세출과목에 편성하여야 한다.

- 나) 보조금(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목적사업비, 기타지원금) 사용잔액
- 교부당시 사용 잔액의 반납을 조건으로 전출(보조)한 사업비의 전년도 사용 잔액
- 다) 이월금
- 전년도에 이월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으로만 관리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구분**

구 분	명 시 이 월 비	사 고 이 월 비
내용상 요건	당해 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로서 세출예산에 명시(예산 성립 시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그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회계연도말 시점)
절차상 요건	학교운영위원회 사전심의 필요	학교운영위원회 사전심의 불필요
재 이월	이월연도 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하여 사고이월(재 이월) 가능	재 사고이월 불가

4. 세출 예산

가. 세출 예산구조의 정의

1) 세출 사업예산

1 레 벨 정책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학교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상위 사업 분류로 단위 사업의 뮤음 교육과학기술부 설정 예시 : 인적자원운용,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기본적 교과활동 등
2 레 벨 단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써 사업 성격별로 통합·단순화한 사업 분류로 세부사업의 뮤음 교육과학기술부 설정 예시 : 교직원보수, 교과활동, 특별활동 등
3 레 벨 세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세부내역으로써 각 사업담당자가 실제 운용하는 최소단위의 사업 단위학교별 자율 설정 (<u>2011학년도 학교회계 세출 예산서 표준안을 참고하여 설정</u>) 예시 : 학교운영지원비수당, 학교급식운영 등

2) 세출 성질비목 (목-세목-원가비목<회계과목>)

100 인건비	• 사립학교 교직원의 봉급, 비정규직 보수 등
200 물건비	• 단위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300 이전지출	• 저소득층자녀 지원비, 학부모 여비 등 이전 경비
400 자산취득	•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자본적 지출 경비
500 상환지출	• 민자사업지급금 (BTL 원금 및 이자)
600 전출금 등	• 학교회계 간 전출금
700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및 목적사업비(국고) 반환 경비

나. 편성체계

- 1) 세출예산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부항목”, “목”, “세목”으로 구분하여 편성
- 2)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은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 설정”에 명시된 체계에 의하되 모든 경비는 기능별·사업별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편성
- 3) “목”, “세목”은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의 구분에 따라 편성

다. 예산편성 내역 및 기준

- 1) 인적자원 운용([학교회계 정책, 단위사업 구분의 변경된 세부사업명으로 편성](#))

가) 교직원 보수

(1) 교원연구비(초등학교는 해당 없음)

- 대상 : 중·고등학교 교원 및 통합학교의 중·고등학교 교원
- 지급금액 : 매월 55,000원

▶ 단, 통합학교의 초등교원자격증을 가진 교장·교감 및 학교급별 과정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교의 유·초등부 교원에게는 교원보전수당과 산금과 교원연구비와의 차액만큼을 지급할 수 있다.

- 가산금

▶ 중·고등학교 교원 및 통합학교의 중·고등학교 교원(단, 초등교원자격증을 가진 교장·교감 포함), 특수학교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0,000원의 학생지도를 위한 연구비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직책 및 관리수당(초등학교는 해당 없음)

- 각급 학교에서는 다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직책 및 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지급기준

직종별	구분		비 고
	중·고·특수학교 직책수당(원)	관리수당(원)	
교장	35,000	-	※ 통합학교의 교장·교감이 초등교원일 경우 포함.
교감	25,000	-	
부장교사	10,000	-	
행정실장	25,000	65,000	
일반직	7급 이상	-	
	7급 미만	-	
기능직	-	50,000	
학교회계직원	-	40,000	※ 연봉제계약직 학교회계직원 제외

※ 고등·특수학교의 행정직원 중 책임자가 아닌 6급 일반직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정계처분, 신분변동 등에 의한 교원연구비, 직책 및 관리수당 지급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액 지급한다.

▶ 과연, 해임, 면직, 퇴직, 복직, 전보 및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발령일(처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정직·직위해제·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으로 당해 학교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 감봉처분을 받은 교직원의 감봉기간 중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 ▶ 결근(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한 교직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교원연구비, 직책 및 관리수당의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타기관으로 파견된자의 교원연구비, 직책 및 관리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
(관내 학교간 파견 교원은 파견받은 학교에서 지급하되, 학교가 아닌 교육청·사업소 등의 파견된 경우는 미지급)

나)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 교직원의 교수 및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 사업비
 - 직무연수, 자격연수, 정보화연수, 연구지원, 연구수업운영, 연구모임지원, 수석교사제 운영 등
 - 자율연수(교원)
 - ▶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특수분야연수기관의 직무연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원격직무연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자기능력개발계획에 따른 교원자율직무연수(학교단위 및 개인 자율연수)경비 지원(정원 내 기간제교원 포함)
- 교원, 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
 - 이전비, 동호회지원, 퇴임식행사, 교직원체육행사, 교직원문화행사, 교직원포상 등)
 - ※ 피복비(교원의 실험·실습복 등)는 [단위사업 : 교과활동] 제 사업비에 편성
- 교원, 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맞춤형복지 경비 사업비
 - 학교회계직원맞춤형복지비
 - ▶ 상시·지속적 업무에 1년 이상 근로한 자 (계속근로 1년미만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 ▶ 지원금액 : 기본점수 150p(15만원)+근속점수 10p~100p(1만원~10만원)

근무년수	1년이상	2년이상	3년이상	...	9년이상	10년이상	비고
부여점수 (금액)	10p (10,000 원)	20P (20,000 원)	30P (30,000 원)	...	90P (90,000 원)	100P (100,000 원)	

- ▶ 집행방법 : 「학교회계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계획, 교육협력과 2161(10.11.17)호」 참조

2)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가) 급식관리

- 학교급식소(실) 운영, 우유 유·무상 공급비 등 학교 급식 운영을 위한 사업비
 - 급식운영비 : 급식소모품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
 - 급식기구확충비 : 오븐기, 소독기, 식기세척기, 야채절단기 등
- 영양사, 조리종사원 등 급식 관련 학교회계직원인건비
-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제 사업비

나) 기숙사관리 :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 사업비

다) 보건관리

- 학생치료 등 학생 안전관리 관련 제 사업비
- 학교 학습환경, 시설 등 제반 환경위생 관련 제 사업비
- 학생 건강진단 등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관련 제 사업비
- 약품구입 등 보건실 운영 제 사업비
※ 보건실현대화는 [단위사업 : 교육여건 개선]에 편성

라) 교육격차 해소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 지원 제 사업비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학비지원,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 지원(자유수강권 등), 정보화 지원 등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제 사업비로 급식비 지원, 학비 지원, 정보화 지원,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 지원 등
- 기타교육 및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제 사업비로 다문화가정 지원,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농산어촌연중돌봄학교 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등)

마) 학생 장학 지원 : 내/외부 학생 장학금 지원 제 사업비

바)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

- 졸업앨범 제작 제 사업비
- 학생교과서 구입 제 사업비
- 교복 물려주기, 통학차량운영지원, 학교 매점 관리, 학생증 제작 등 기타 학생복지를 위한 제 사업비

3) 기본적 교육활동(직접교육경비)

- 표준 교수학습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제 사업비
- 교과별 실험실습에 필요한 재료비, 교구 및 설비비, 학급(수업)용품구입비, 학사관리운영비, 교육자료 인쇄비, 현장교육 및 특별활동지원비, 학급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교행사 등 각종 교육행사비, 기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제 경비(비품 포함)를 계상
- 교수학습용 복사(인쇄)기 유지보수 및 복사(신문)용지 구입비
- 교수학습을 위한 소규모 학교환경관리비(운동장 관리비 등)

가) 교과활동

- 단위학교가 표준 교육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교육과정에 명시된 모든 교과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구·설비와 재료를 구입하고 유지·관리하는 제 사업비
- 학습준비물 구입, 교사용 지도서 구입, 보결(대강)수업 관리 등
 - 학급운영비 : 회계관계규정 범위내에서 학급담임의 자율성이 반영되도록 운영(학급행사, 학생상담 등을 위한 학급운영비)
- 각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 특수학급 운영비 편성기준

학교급별	특수학급 운영비(1학급당)	
유치원	4,178천원	
초등학교	4,072천원	
중학교	4,748천원	
고등학교	일반계	5,353천원
	상업계	5,242천원
	공업계	6,195천원

- 보충과정 운영/기초학력지도/교내 교과협의회/영어 보조교사 운영 등 교과활동 관련 제 사업비
 - 기초학력지도 : 초·중·고 학력향상 및 기초학력 향상교실 지원 관련 활동 제 사업비
- 피복비 : 교원의 실험·실습복, 중·고등학교의 체육담당교사와 초등학교에서 체육과목을 직접지도하는 교사의 체육복 및 운동화

나) 특별활동

- 환경정리, 청소활동 등 학교환경정리활동 제 사업비
- 입학식, 졸업식, 경시대회, 축제, 체육대회, 사생대회, 백일장, 학예회, 각종 행사 등 학생 관련 행사활동 제 사업비
- 학생자치회 운영, 선도부 운영, 동아리(씨클)활동, 청소년단체 활동, 교지 및 학교신문 제작 등 학생자치활동 제 사업비
- 진로지도검사, 학생심리검사, 상담, 봉사, 계발, 발명교실 운영, 적응활동 제 사업비

다) 재량활동

- 논술교육, 독서교육 등 교과 심화·보충학습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 인성교육, 보건교육, 성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금연교육, 통일교육 등 범교과학습 제 사업비
- 다문화이해교육 등 주제탐구학습, 기타자율학습 소요 제 사업비

라) 체험활동

- 수학여행, 소풍, 견학, 문화탐방, 도·농간 교류학습 등 현장체험학습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 극기훈련, 야영수련, 학년별수련, 임원수련 등 학생수련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4) 선택적 교육활동

방과후 학교, 평생 및 직업, 국제교육 등 표준교육활동이 아닌 선택적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가) 방과후학교 운영

- 교과의 보충, 특별활동의 체계화, 재량활동의 일부 등 교수-학습활동의 여러 영역에 걸쳐 운영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재원의 일부가 수익자부담으로 운영
- 정규 수업과정 외 방과후 학교 운영 제 사업비
- 방과후 보육교실, 돌봄교실 운영 등 제 사업비

나) 평생교육 :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체육 등 평생교육 제 사업비

다) 직업교육 :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선택적 직업교육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라) 국제교육 : 외국학교와의 국제교류 등 국제교육 관련 제 사업비

마) 교기육성 : 전문적 운동부, 기악부 운영 및 육성 등 제사업비

바)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 영재교육운영 등 위에 제시하지 않은 선택적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 전문계고등학교 학생의 학원위탁교육비 등 외부기관 및 시설로 학교교육을 일부 위탁한 경우 소요되는 제 사업비

□ 수익자부담경비(300 이전지출 중 310 보전금 과목)

- 31001 12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 지원금
- 31001 13 수익자부담교육활동비 지원금
- 31001 14 급식비지원금
- 31001 15 기숙사비지원금 등

▶ 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및 정산

- ▶ 타 비목과의 이·전용이 불가능하며, 해당 사업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해당 과목에서 학부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소액이어서 일일이 정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발전기금으로 전출하거나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사업 등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성립 전 예산의 집행

- ▶ 예산편성 당시 예정에 없었던 사업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이전에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 인솔교직원 여비

- ▶ 수익자부담사업(현장체험 학습 등) 추진 시 인솔교직원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학교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한다.

수익자부담경비의 공개

- 공개내용 : 사업명, 소요예산, 수행업체, 선정방식, 항목별 집행내역 등
- 공개방법 :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지
- 공개시기 : 정산 후 10일 이내(당해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공개)

5) 교육활동 지원

교수학습 간접 교육비로 교육활동 지원 제 사업비

가) 교무업무 운영

- 교수학습에 직접 투입되지 않으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제사업비로 출석부 구입, 교내외 학생생활지도 등 교무학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
- 학생 평가 소요 제 사업비, 학부모 시험감독 운영 제 사업비, 학생 평가 협의회 운영 제 사업비 등 교수학습 간접비

나) 연구학교 운영 :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제 사업비

다) 학습지원실 운영 : 방송장비 구입 등 방송실, 도서관, 상담실, 정보화실, 공동설습소 등 운영 제 사업비

라) 교육여건 개선

- 교수학습 및 학교행정을 위한 시설, 장비의 개선을 위한 사업비
※ 개별부서에 제한된 노후 시설 및 장비의 개별적 교체는 해당 사업비에 편성
- 책 · 결상구입 및 교체, 사물함교체, 칠판수리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필 요한 비품(교구) 확충 및 교체
 - 교직원PC교체, 책결상구입, 사물함교체, 칠판교체, 교실소규모수선, 보건실 · 급식실 · 도서실 · 과학실 현대화 등
 - 교단선진화용교육기자재(교육용PC 및 교단선진화용 영상기기)구입
- 관리실(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등) 리모델링 사업
 - ▶ 신축 또는 관리실 리모델링 사업 경과년수가 10년 이하 인 경우 보수 불가 (단, 시설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하되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면밀히 검토
 - ▶ 관리실 임의 위치변경 및 사용자 기호도에 따라 미관을 확보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소모성 · 전시성 사업을 지양 하고 특히, 마감재 및 집기류 등은 사치스럽고 화려하지 않도록 검소하게 설치
 - ▶ 사무용 집기의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09-46호)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소관 물품정수관리지침(복지재정과-11947, '08.11.25)을 준수하되, 내용연수가 경과되더라도 물품의 상태나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최대한 연장 사용
 - ▶ 관리실을 위한 이 · 전용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 제7차 교육과정 기본 시설 기준 면적 준수
※ 시설 기준 면적은 우리교육청 실과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ice.go.kr>)
교육시설 자료방 > 관련법/지침 > 27번 제7차 교육과정 급별 시설 기준표('05.4.1) 참조

6) 학교 일반운영

학교기관 및 부서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

가) 부서 기본 운영

- 교장실, 행정실, 교무 각 부서 기본 운영 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피복비(시설관리인의 작업복) 등을 계상
- 방송통신고등학교 기본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을 계상

(1) 업무추진비(230)

(가) 업무추진비 계상 한도

- 기관운영(230-01) 및 사업추진(230-02) 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연액)

구 분	교 당	1학급당	교직원1인당	비고
초·중·고·특수학교	4,000	60	80	
인천예술고, 인천과학고, 인천국제고, 인천체육고, 미추홀외국어고	6,000	60	80	

- ▶ 방송통신고학급, 야간학급, 특수학급, 병설유치원학급, 분교, 공동보육시설의 보육실을 포함하여 학급수 산출
- ▶ 교직원 수는 정원기준이며, 학교회계직원 포함

- 직책급 업무추진비(250-2)

(단위 : 원/월액)

지급대상	지급액	가산금	비고
각급 학교 교장	매월 250,000원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3,000원 가산	방송통신고학급, 야간학급, 특수학급, 병설유치원학급, 분교 공동보육시설의 보육실 포함

- ▶ 통합학교, 병설학교는 1학교로 인정, 이중지급 금지

(나)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

-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학교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사용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교직원간담회비, 부별협의회비 등), 학교 구성원(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조사비

(다) 유의사항

- 교직원당 경비는 교육과정개편에 따른 학력향상비와 교과협의회 운영비, 연구모임활동지원비 등 교직원복지증진과 교수학습활동을 위한 사기양양사업에 우선 편성
- 통합학교 및 병설학교(유치원병설교 포함), 공동보육시설 설치교는 1학 교로 인정한다. 다만 월 100천원을 한도액외에 추가 계상할 수 있다.
-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개인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지인·타학교 교직원 등에 대한 식사·주류 접대, 교장(장학)협의회·교감협의회·동문회 등 사적 단체의 회비·식사비, 퇴직 전별금, 기자·지방의원(보좌관)·교육위원 등에 대한 격려금·장도금·전별금 등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
 - ※ ○○학교 교장이 △△학교 교장 퇴임식에 전별금 지급시 학교회계(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불가함
 - ※ 경조사비 지급 시 유의사항
 - ▶ 지급 범위
 - 지급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결혼, 사망
 - ▶ 지급 대상자
 - 당해학교 상근 교직원
 - 학교운영위원, 자매부대(자매학교 포함)·인근 경찰서·소방서 등 학교에 도움을 주는 유관기관(단체)의 임직원(타 학교, 지역 교육청, 본청 등은 지급 범위인 유관기관에서 제외)
- 교직원의 퇴임행사 관련 경비는 회당 2백만원의 범위 내(1명 추가시 25%이내 가산)에서 퇴임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당해사업에 한하여 한도액 외에 추가 계상할 수 있으나, 전별금, 위로금, 기념품, 선물비용 등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
-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업무추진비는 한도액 외에 10%를 추가 계상할 수 있다.
- 경조비 지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설 장비 유지

- 전기/수도/통신 시설 등 학교시설 유지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용역비 등 기본적 경비 및 관리를 위한 경비를 포함하는 제 사업비
- 기본 시설 유지를 위한 소규모 수선 제 사업비

다) 일반행정 관리

- 행정(사무)보조원(구 학부모회직 포함) 인건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행정지원을 위한 인력 제 사업비
- 학교 사무용품 구입, 사무용기기 구입 및 수리 등 일반행정 사무관리를 위한 제 사업비

(1) 무기계약근로자(학교회계직원) 인건비

- 각급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가) 정원기준 및 임용관리

- 정원기준
 - ▶ 각급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아래 정원기준 범위내로 학교회계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구 분		24학급 미만	24~35학급	36학급 이상
정원수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2	3	4

※ 비고

- 학급수에는 방송통신고학급, 야간학급, 특수학급 포함
- 정원기준에는 상시고용 일용직을 포함
- 단위학교의 재정여건 및 인력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회계직원 정원기준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일 현재 동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자연 감소할 때까지 동 기준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간주 하며 자연 감소시에는 충원을 금지 한다.
- 교육비특별회계의 목적사업비로 지원을 받아 채용했으나, 그 지원이 중단된 경우 학교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 운용할 수 있다.

(나) 인건비 편성

- 호봉제직원 보수

▶ 담당업무에 따라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 보수를 기준으로 편성하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을 준용하여 편성하되 연차수당, 산전후 휴가기간중 보수, 초과근무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 연봉제직원 보수

▶ 연봉제직원의 보수는 「초·중등학교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기준/행정과-2686(2006.3.29)호」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용하여 편성한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산출하여 편성하되 인건비와 별도항목으로 편성하여 사회보험 가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2)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 인건비

- 학교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비정규직 인건비

(가) 비정규직의 고용제한

- 비정규직의 고용은 산가, 병가 등의 대체인부, 일회성 단순노무자, 특정한 업무수행 또는 사업의 완료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기간으로 운영

(나) 비정규직 인건비 일일단가

구 분	일일단가	비고
연봉등급 5등급 학교회계직원 대체인력 인건비, 1년 미만의 단순 사무보조원, 보통인부	42,290원	일용직은 유급 경조사 휴가 불인정
연봉등급 4등급 학교회계직원 대체인력 인건비	47,180원	

(3) 퇴직적립금 관리

- 학교회계직원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 규정에 따른다.

- 퇴직연금제도 설정시 소요되는 학교부담 수수료는 공통운영비 과목으로 편성한다.
- 퇴직금제도 설정시 퇴직적립금 관리
 - ▶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시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퇴직금 산정방식에 의한 추가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퇴직적립금 추가소요액 = 퇴직금소요액 - 전 회계연도까지 누적된 퇴직적립금

- ▶ 전 회계연도까지 누적된 퇴직적립금은 학교장 또는 출납원 명의로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서 별도 관리한다. 당해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된 퇴직적립금은 회계연도 말에 지출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한다.
- ▶ 이 경우 퇴직금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관할청에 예·결산 보고시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그 적립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학교운영 협력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제 사업비

마) 학부모 지원

- 학부모 학교참여를 위한 학부모회 지원 및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등 학부모지원 제 사업비
 - ▶ 학부모 자원봉사 동아리 운영, 학부모 상담활동, 모니터링 활동, 학부모교육 등 학부모 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 경비

7) 학교 시설확충

대규모 수선비, 교실 중·개축 등 시설 사업비

8) 학교 재무활동

목적사업비 반환 및 예비비 관리 등 비 사업성 재무활동

가) 반환금 : 전년도 목적사업비 등 집행 잔액 반환

나)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연도중에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결산서 제출시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예비비의 계상한도 : 당해연도 당초예산 중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목적 사업비전입금 제외)과 학교운영지원비 회비 수입 총액의 1% 이상 계상

5. 예산의 집행기준

가. 물품구매 · 계약

1) 수의계약내역의 공개

- 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시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대상 · 방법 등은 회계예규 및 지침 등에 따른다.

2) 물품구매 및 검수

- 물품구매시 사용자는 물품의 규격, 사양 등을 명시한 품의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의 검수시 사용자가 입회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나. 신설학교 개교경비 집행의 적정성 제고

- 신설학교 개교경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개교경비 지원기준을 적용해 편성 및 집행하여 당초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VI. 행 정 사 항

1. 학교재정운영의 공개

학교 예산 및 결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공개방법

- 1) 예 · 결산은 단위학교 홈페이지의 재정정보 전용게시판(메인 화면에 배너 설치)에 공개하고 기타 직원회의, 학부모회의,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 이용
- 2) 예산집행현황은 분기별로 홈페이지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공개
■▶ 분기별 예산집행현황 공개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별도 공개

2.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가. 학교운영비 이관·통합 배분 확대 및 목적사업비 감축

1) 단위학교 이관사업 확대

- 교단선진화기기, 교육용 컴퓨터 보급, 교원자율연수비, 학력향상지원비
※ 학교회계 자체 편성 운영 (2011년부터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지원)

2) 학교운영비 통합배분사업 확대

- 유치원운영비지원, 과학실험보조원인건비, 깨끗한학교만들기, 운동부지도자인건비, 학교급식비정규직인건비, 학교급식운영비지원, 초등돌봄교실운영비지원, 교무업무보조원인건비 등 학교운영비로 교부
※ 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로 교부

나.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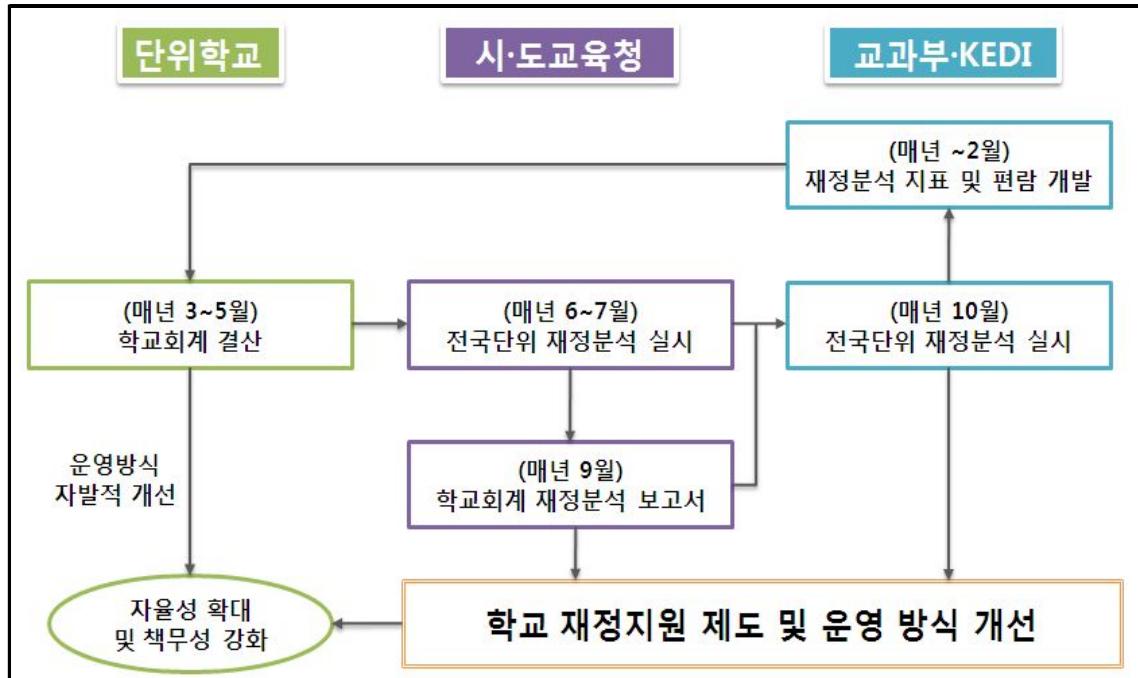
- 자율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보장

3. 학교회계 재정분석 실시

가. 2010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시부터 실시 예정

나. 학교회계 분석 체계화에 따른 학교회계 관리 철저

<학교회계 재정분석 업무분담 · 수행체계 및 일정>



4.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에 의한 예산 운용

학교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 결산의 전과정이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에 의해 운용

5. 학교회계 예·결산서 제출

예·결산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예·결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예산이월의 최소화

단위학교의 사업은 당해연도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 세출예산은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무리한 예산집행은 지양한다. 또한 단위학교의 특정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공립학교 회계 규칙」 제19조(세출예산의 이월)에 의거 명시 및 사고이월제도를 활용한다.

7. 관계규정 준용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등 회계관계 제 규정을 준수한다.

8. 예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가. 예산의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는 원 단위로 계상
- 나. 세입·세출의 천원 미만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처리(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세입의 천원 미만은 절사하고, 세출의 천원 미만은 절상)
- 다. 계량단위는 미터법 적용
- 라. 각종 단가는 예산편성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계상하고, 단가가 없는 경우는 조달청 및 실거래 단가 적용
- 마.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산출기초 없이 총액 계상 금지
 - ▶ 산출기초 순서 【원 × 명, 개(名, 個) × 회, 식(回, 式) × 월, 일(月, 日)】
 - ▶ 예시 : 5,000원 × 2명 × 2식 × 1월 = 600,000원

9. 제출서류 일람표

구 분	제출기일	제출서류
본예산서	학교운영위원회심의 후 학교장이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서 ※ edufine(학교회계시스템) 예산확정으로 자동 반영 - 부속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현황[서식61] 2. 학교회계직원 개인별 명단[서식62] 3. '2011. 학교회계직원 퇴직금 적립현황[서식63]
2010학년도 결 산 서	학교운영위원회심의 후 학교장이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ufine(학교회계시스템) 결산서 보고자료 제출 처리 - 부속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현황 [서식61] 2. 학교회계직원 개인별 명단 [서식62] 3. '2010. 학교회계직원 퇴직금 적립현황 [서식64] 4.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기관 양식) (단, 결산잔액과 예금잔액증명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부합 조서 첨부)

제 2 장



2011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기준

I. 기본방향

1. 학교기본운영비의 연차적 증액 지원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2.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05년도 표준교육비 자료에 근거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부금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학교기본운영비 산출
3.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수행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총액 배부하여 학교장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

II. 2011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편성기준

1. 편성기준

가. 적용기준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기준(2005년 한국교육개발원 표준 교육비 산출 연구자료)
- 2009학년도 학교회계 결산 분석자료 및 2011년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기준액 최종 확정

나. 적용기준일(학급수, 학생수) : 2011. 3. 1(추정)

다. 표준운영비 = [(학교 + 학급 + 학생단위 총경비) + 인건비] × 지수
- 학교운영지원비 + 통합배부사업비

- 학교단위총경비 : 총학교수 × 교당기준 단가
- 학급단위총경비 : 총학급수 × 급당기준 단가
- 학생단위총경비 : 총학생수 × 학생당기준 단가
- 지수 : 2011년도 추계자료 취합 후 총액 배분
- 인건비 : 교직원인건비(교원연구비, 직책 · 관리수당)
- 학교운영지원비 = 회비수입 × 징수율

라. 산출기준

【교당경비】

(단위 : 천원)

학교급별	1학급	2학급	3학급	4학급	5학급	6학급	7학급	
병설유치원	38,804	46,565	54,326	62,086	69,847	77,608	77,608	
학교급별	3학급	6학급	9학급					
단설유치원	77,608	120,052	141,171					
학교급별	6학급	12학급	18학급	24학급	30학급	36학급	42학급	
초등학교	207,330	245,694	299,372	334,235	371,054	416,828	472,981	
중 학 교	228,891	276,809	322,658	371,734	408,527	465,590	499,547	
고등 학교	일반계	267,458	330,510	391,676	437,195	492,713	542,332	616,936
	상업계	387,509	450,793	522,765	564,425	629,308	681,527	759,398
	공업계	437,127	633,621	1,222,669	1,279,510	1,343,006	1,396,525	1,491,663
특수학교	-	392,110	-	516,246	-	644,840	-	

※ 표 이외의 학급수의 경비는 직선보간법에 따름

【학급당 · 학생당경비】

(단위 : 천원)

학교급별	구분	학급당	학생당
유치원	병설	5,532	53
	단설	5,532	53
초등학교		2,704	111
중 학 교		4,137	199
고등학교	일반계	7,864	193
	상업계	8,438	193
	공업계	8,689	196
특수학교		2,185	226

- 통합학교 운영비
 - ▶ 교당경비 : 학교급별 기준액 적용(단, 초·중학교는 교당경비의 2/3 편성)
 - ▶ 급당·학생당 경비 : 학교급별 기준액 적용
- 단설유치원 : 일반학급, 특수학급 기준 별도 적용
 - ▶ 일반학급 : 단설유치원 표준운영비 기준
 - ▶ 특수학급 : 원당 단가는 5학급 미만은 학급별 30,000천원 가산 지급
5학급 이상은 학급별 20,000천원 가산 지급
급별·학생당 단가는 특수학교 표준운영비 기준
- 인천산업정보학교는 공업계고등학교에 준하여 적용
-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시설이 완공되어 개교하는 학교의 기본운영비 산출은 기본운영비에서 5천만원(민간사업자 시행 운영비) 감하여 지원(협약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 미완성학급에 대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 ▶ 지원대상학교 : 완성학급대비 현재학급이 50% 이하인 학교
 - ▶ 지원기준 : (완성학급 「교당경비」 - 현재학급 「교당경비」) × 40%

제 3 장



예산 편성 기준 단가

제 3장

예산 편성 기준 단가

I.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

1. 인건비

구 분	지급 근거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제35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제32조 병역법 제31조
상여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초과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17조
정액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등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성과상여금, 명예퇴직수당)
복리후생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등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II.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는 기준 경비

1. 일·숙직 수당

- 경비성격 :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
- 지급기준

구 분	단 위	단 가	계상일수	연 액
일직비	1일당	50,000원	116일	5,800,000원
숙직비	1야당	50,000원	365일	18,250,000원
(계상원칙)				
① 기관당 2인 근무원칙(단, 동일건물에 2개 이상의 기관이 있는 경우는 통합 운영)				
② 수위·기계실·보일러실 근무자는 일·숙직비 미지급				

2. 교육강사 수당

□ 경비성격 : 공무원교육기관의 교육과정운영 등 이념교육 및 공무원 직무 교육에 따른 외래강사 수당(교육과학기술부 강사수당 지급기준 권고안 반영,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9032호, '10.8.23)

□ 편성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지급대상	단가
특별 강사	1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교육운영상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시간당 50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	1시간 300 초과시간당 200
	2 전·현직 장·차관,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교육감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교육운영상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강사	1시간 200 초과시간당 150
일반 강사	1 대학 전임강사 이상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이사급 이상), 편·겸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문화·예술 등 특별분야의 전문강사 4급과장(담당관)직위 이상의 공무원, 과장(담당관)이상 직 위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유·초·중등학교장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공무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 및 일반 2·3급, 보조강사, 다수인 강사 이외의 강사	1시간 160 초과시간당 90
	2 대학 시간강사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으로 1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4·5급 공무원 장학관(교육연구관),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외국 인(원어민)강사	1시간 90 초과시간당 60
보조 강사	3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제1, 2등급에 해당하지 않 는 자) 외국어·체육·전산강사 등 강사	1시간 70 초과시간당 40 시간당 50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전산보조 제외) 전산 실기실습 보조자	시간당 40 시간당 30
다수인 (그룹) 강사	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연극 등 예술활동으로 다수인이 공동 참여하는 교육	4인 2시간미만 500 초과시간· 사람당 각 50
기 타	분임지도 : 분임지도 및 분임평가 수당	시간당 30, 초과 20
	원어민(영어)보조교사 : 각종 실기실습보조자에 준함	시간당 40
	원격연수응답(튜터) : 재사용콘텐츠 교과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수당	시간당 30

※ 교통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3. 원고료

항 목	구 분	단 위	단가(원)
원 고 료	국문	○ 1매 - A4 규격, 글자 12포인트, 행 간격 160, 상·하여백 20mm, 좌·우여백 25mm, ※ 장의원고일 경우, 시간당 최대 3매 까지 지급	14,000
	외국어	○ “국문”과 동일	12,000
슬라이드	자막제거	○ 1매	10,000
제작료	녹음	○ 10분(40매)	100,000
파워포인트	국문 (영문, 그림 포함)	○ 1매 ※ 최대 30매까지 지급	5,000

※ 항목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항목만 지급

4. 주요물품 단가

품 명	단 가(원)	품 명	단 가(원)
개인용 컴퓨터(17"LCD모니터 포함)	1,000,000	선풍기(스탠드형)	28,000
노트북 컴퓨터	1,288,000	선풍기(벽걸이형)	31,000
복사기(일반)	2,900,000	진공청소기	130,000
복사기겸용(컬러)	5,000,000	OA책상(L, R형)	280,000
모사전송기	400,000	컴퓨터용책상(일반용)	172,000
레이저프린터(A3)	700,000	컴퓨터용책상(보조)	90,000
레이저프린터(A4)	350,000	사무용·의자(관리자용/1호)	250,000
레이저프린터(컬러, A3)	3,400,000	사무용·의자(실무자용/3호)	160,000
레이저프린터(컬러, A4)	600,000	컴퓨터용의자	47,000
잉크젯프린터(컬러, A3)	550,000	접는의자	27,000
잉크젯프린터(컬러, A4)	230,000	캐비닛(3×6)	180,000
윤전등사기	3,700,000	파일캐비닛(B4)	180,000
칼라 TV(평면/74cm)	340,000	OA서랍(3단)	130,000
프로젝션 TV(143cm)	2,000,000	복사용·지B5(2,500매/상자)	17,000
PDP TV(127cm)	1,800,000	복사용·지A4(2,500매/상자)	21,000
VTR(DVD겸용)	220,000	복사용·지B4(2,500매/상자)	32,000
냉장고(230ℓ)	290,000	복사용·지A3(1,250매/상자)	22,000

※ 상기 내용은 예시 가격이므로 나라장터쇼핑몰 (<http://shopping.g2b.go.kr>)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III. 기타 단위 단가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단가 기준은 관계법령 및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제 4 장



예산과목 체계 및 과목 내용

I.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장	관	항	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 해설
10000					이전수입	
	11000	중앙정부이전수입				
	11200	국고보조금				
	11201	국고보조금				
	1120101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사업으로 별도 통지된 금액	
12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200	비법정이전수입				
	12201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220101	광역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부담금			◦ 도서관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 지원금	
	1220110	광역급식비보조금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 경비 (식품비, 연료비, 인건비 등)	
	1220102	광역급식시설·설비사업보조금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경비	
	1220103	광역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경비	
	1220104	광역교육과정자체개발사업보조금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경비	
	1220105	광역교육과정운영사업보조금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경비	
	1220106	광역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립 사업 및 학교체육 진흥사업 경비	
	1220107	광역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시설정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경비	
	1220108	광역기반시설부담금			◦ 광역자치단체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	
	1220109	기타광역자치단체보조금			◦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12202	기초자치단체전입금				
	1220201	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부담금			◦ 도서관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 지원금	
	1220210	급식비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 경비 (식품비, 연료비, 인건비 등)	
	1220202	급식시설·설비사업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경비	

장	관	항	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 해설
				1220203	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경비
				1220204	교육과정자체개발사업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경비
				1220205	교육과정운영사업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경비
				1220206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및 학교체육 진흥사업 경비
				1220207	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시설정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경비
				1220208	기반시설부담금	◦ 기초자치단체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
				1220209	기타보조금	◦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13000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받는 전입금 수익		
				13100 학교회계전입금수입		
				13101 기본운영비 전입금		
				1310101	기본운영비전입금	◦ 교육비특별회계가 목적 지정 없이 총액 교부하는 학교 기본운영 경비
				13102 목적사업비 전입금		
				1310201	목적사업비전입금	◦ 교육비특별회계가 교부하는 단위학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15000 학교회계간이전수입		
				15100 같은학교 이전수입		
				1510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151010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학교발전 기금 전입금
				15102 학교기업회계전입금		
				1510201	학교기업회계전입금	◦ 같은 학교내 학교기업회계가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전입금
				15103 학교내타회계전입금		
				1510301	학교내타회계전입금	◦ 위 항목 이외의 같은 학교내 타 회계에서 이전되는 전입금(같은학교 세입세출외현금 등)

장	관	항	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 해설
				15200	다른학교 이전수입	
				15201	다른학교회계전입금	
				1520101	다른학교회계전입금	◦ 같은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가 전출하는 전입금 (비조리교가 조리교로 납부하는 급식비 등)
				16000	기타이전수입	
				16100	민간이전수입	
				16102	기타지원금	
				16102	기타지원금	
				1610201	기타지원금	◦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 (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부담금수입 ◦ 기관, 협회 또는 단체들이 교육행정기관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정보화 촉진기금 등)
				20000	자체수입	
				21000	교수-학습활동수입	
				21100	기본적 교육수입	
				21101	입학금	
				2110101	입학금	◦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 의한 입학금 수입(학교급별로 계상)
				21102	수업료	
				2110201	수업료	◦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 의한 수업료 수입(학교급별로 계상)
				21103	지난년도입학금	
				2110303	지난년도입학금	◦ 지난년도 입학금 수입
				21104	지난년도수업료	
				2110401	지난년도수업료	◦ 지난년도 수업료 수입
				21105	학교운영지원비	
				2110301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지원(우성)을 위해 징수하는 중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2110302	지난년도학교운영지원비	◦ 지난년도 학교운영지원비 수입
				21200	선택적 교육수입	
				21201	기숙사 및 급식	

장	관	항	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 해설
				2120101	급식비	◦ 단체급식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2120102	지난년도급식비	◦ 지난년도 급식비 수입
				2120103	우유대금	◦ 단체 우유 급식에 따른 우유대금
				2120104	지난년도우유대금	◦ 지난년도 우유대금
				2120105	기숙사비	◦ 기숙사비
				2120106	지난년도기숙사비	
				21202	단체활동에 관한 수입	
				2120201	현장체험학습비	◦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소풍, 견학) 수익자 부담금
				2120202	지난년도현장체험학습비	◦ 지난년도 현장체험학습비 수입
				2120203	수련활동비	◦ 극기훈련, 야영수련, 학년별수련, 임원수련 등 수익자 부담금
				2120204	지난년도수련활동비	◦ 지난년도 수련활동비
				2120205	청소년단체활동비	◦ 각종 청소년 단체활동 수익자 부담금
				2120206	지난년도청소년단체활동비	◦ 지난년도 청소년단체활동비
				2120207	교류학습활동비	◦ 도농간 교류학습, 어학연수 등 국내외 교류학습활동 수익자 부담금
				2120208	지난년도교류학습활동비	◦ 지난년도 교류학습활동비
				2120209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	◦ 방과후 또는 방학중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수익자 부담금
				2120210	지난년도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	◦ 지난년도 방학후학교교육활동비
				2120211	유치원종일반운영비	◦ 유치원 종일반 운영 수익자 부담금
				2120212	지난년도유치원종일반운영비	◦ 지난년도 유치원종일반운영비
				21203	기타선택적교육수입	
				2120301	졸업앨범대금	◦ 졸업앨범 제작, 구매 수익자 부담금
				2120302	지난년도졸업앨범대금	◦ 지난년도 졸업앨범대금
				2120303	교과서대금	◦ 교과서 유상구입 수익자 부담금
				2120304	지난년도교과서대금	◦ 지난년도 교과서대금
				2120305	통학차량비	◦ 통학차량, 통학선 등의 수익자 부담금

장	관	항	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 해설
				2120306	지난년도통학차량비	◦ 지난년도 통학차량비
				2120307	기타교육활동비	◦ 기타 교육활동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2120308	지난년도기타교육활동비	◦ 지난년도 기타교육활동비
22000 행정활동수입						
	22100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22101 사용료수입					
		2210101	토지사용료수입		◦ 토지 및 임야 등에 대한 사용료 수입	
		2210102	시설물사용료수입		◦ 시설물 사용료 수입(도서관, 수영장, 체육관 등)	
		2210103	입장료수입		◦ 공연장, 과학관, 어린이 회관 등의 시설물 입장료 수입	
		2210104	기타사용료수입		◦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사용료수입	
	22102 수수료수입					
		2210201	입학수험료		◦ 학교입학수험료징수조례에 의한 입학수험료 수입 및 전형료	
		2210202	검정수수료		◦ 자격검정 및 채용시험, 기타 검정시험수수료수입	
		2210203	제증명수수료		◦ 제증명수수료수입	
		2210205	기타수수료		◦ 독촉수수료 등	
23000 자산수입						
	23100 자산임대수입					
	23101 임대료수입					
		2310101	토지임대수입		◦ 대지, 전, 답, 임야 등에 대한 임대수입	
		2310102	건물임대수입		◦ 건물에 대한 임대 수입	
		2310103	기타자산임대수입		◦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재산 임대 수입(물품 임대 포함)	
	23200 자산매각					
	23201 토지매각					
		2320101	토지매각		◦ 토지(임야) 매각수입	
	23202 건물매각					

장	관	항	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 해설
				2320201	건물매각	◦ 건물매각수입
				2320203	구축물매각	◦ 공작물 매각수입
				23203	기계장치매각	
				2320301	기계장치매각	◦ 토지, 임야, 건물, 공작물을 제외한 기타자산 매각수입
				2320302	기계요소공작기계매각	◦ 기계요소공작기계매각
				2320303	산업기계매각	◦ 산업기계매각
				2320304	의료화학분석기기매각	◦ 의료화학분석기기매각
				2320305	물리시험측정기기매각	◦ 물리시험측정기기매각
				2320306	기타설험장비매각	◦ 기타설험장비매각
				2320307	기타잡기기매각	◦ 기타잡기기매각
				23204	기타유형자산매각	
				2320401	전기통신기기매각	◦ 토지, 임야, 건물, 공작물, 기계장치를 제외한 기타재산 매각수입
				2320402	사무용기기매각	◦ 사무용기기매각
				2320403	사무용집기매각	◦ 사무용집기매각
				2320404	기타집기비품매각	◦ 기타집기비품매각
				2320405	도서매각	◦ 도서매각
				2320406	선박매각	◦ 선박매각
				2320407	항공기매각	◦ 항공기매각
				2320408	운반건설기계및차량매각	◦ 운반건설기계및차량매각
				2320409	박물관유물매각	◦ 박물관유물매각
				2320410	입목매각	◦ 입목매각
				2320411	기타의기타유형자산매각	◦ 기타의기타유형자산매각
				23205	무형자산매각	
				2320501	특허권매각	◦ 무형자산 매각대 수입
				2320502	저작권매각	◦ 저작권매각
				2320503	소프트웨어매각	◦ 소프트웨어 매각

장	관	항	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 해설	
				2320504	교육컨텐츠매각	◦ 교육컨텐츠매각	
				2320505	실용신안권매각	◦ 실용신안권매각	
				2320506	의장(디자인)권매각	◦ 의장(디자인)권 매각	
				2320507	상표권매각	◦ 상표권매각	
				2320508	상호권매각	◦ 상호권매각	
				2320509	전신전화보증금회수	◦ 무체재산에 포함된 전신전화 보증금에 대한 회수분	
				2320510	기타무형자산매각	◦ 위 항목을 제외한 기타무형자산 매각	
24000 이자수입							
		24100 이자수입					
		24101 이자수입					
			2410101	정기예금이자	◦ 정기예금이자 수입		
			2410102	기타예금이자	◦ 적립금이자수입 및 정기예금이자수입을 제외한 이자 수입		
25000 적립금수입							
		25100 적립금처분수입					
		25103 적립금처분수입					
			2510301	시설사업적립금처분수입	◦ 예) 10년뒤 기숙사 보수나 재건축 등을 위해 매년 적립한 적립금을 처분 (예금해지하여 재 세입 조치하는 적립금처분수입)		
			2510302	상각자산충당적립금처분수입	◦ 고가의 물품, 기자재 감가상각 충당 적립금 처분 수입		
			2510303	목적사업적립금처분수입	◦ 예) 개교 100주년 행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수년간 적립해 온 적립금을 만기해지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목적사업 적립금 처분수입		
			2510304	퇴직적립금처분수입	◦ 퇴직적립금을 처분한 경우 발생하는 처분 수입 ◦ 세입세출외현금에서 퇴직적립금을 직접 처분, 지급할 경우엔 미 계상 - 세외에서 직접 처리할 경우엔 예산회계 변동없이 재무회계만 변동		
		25200 적립금이자수입					
		25201 적립금이자수입					
			2520101	적립금이자수입	◦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 단, 적립금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적립금 처분수입으로 계상		

장	관	항	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 해설
				26000	금융자산회수	
				26300	보증금 회수	
				26301	보증금회수	
				2630101	단기임차보증금회수	◦ 단기 임차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2630102	장기임차보증금회수	◦ 장기 임차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2630103	단기기타보증금회수	◦ 단기 기타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2630104	장기기타보증금회수	◦ 장기 기타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27000	잡수입	
				27100	제재금수입	
				27101	변상금	
				2710101	공유재산변상금수입	◦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받거나 변상명령에 의한 공유재산 변상금 수입
				2710102	기타변상금수입	◦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받거나 변상명령에 의한 기타 변상금 수입
				27102	위약금	
				2710201	위약금수입	◦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
				27103	연체료	
				2710301	공유재산연체료수입	◦ 공유재산 연체료 수입
				2710302	기타연체료수입	◦ 기타 연체료 수입
				27105	기타제재금수입	
				2710501	기타제재금수입	◦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제재금 수입
				27200	잡수입	
				27201	생산물매각대	
				2720101	생산물매각대	◦ 생산물 매각에 따른 수입
				27202	동식물매각대	
				2720201	동식물매각대	◦ 동식물 매각에 따른 수입
				27203	기타잡수입	
				2720301	기타잡수입	◦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

장	관	항	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 해설
				27300	과년도수입	
				27301	과년도수입	
				2730101	과년도수입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법정 전입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제외한 기타 과년도수입
40000				40000	기타	
				41000	전년도이월금	
				41100	순세계잉여금	
				41101	순세계잉여금	
				4110101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1200	보조금 사용잔액	
				4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41201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41202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4120201	광역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4120202	기초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41203	학교목적사업비사용-잔액	
				4120301	교특목적사업비사용-잔액	◦ 교부 당시 사용-잔액의 반납을 조건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출(보조)한 사업비의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 반납하여야 할 사용-잔액 ◦ 학교회계 결산 이후 최초 추경에 편성하여 반납 ◦ 결산 보고시 추경으로 편성, 반납해야 할 금액임을 명시
				41204	기타지원금사용-잔액	
				4120401	기타지원금사용-잔액	◦ 지원 당시 사용-잔액의 반납을 조건으로 기타 지원 단체에서 지원한 사업비의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지원 단체에 반납하여야 할 기타 지원금 사용-잔액 ◦ 학교회계 결산 이후 최초 추경에 편성하여 반납 ◦ 결산 보고시 추경으로 편성, 반납해야 할 금액임을 명시
				41300	이월금	
				41301	전년도이월사업비	
				4130101	명시이월사업비	◦ 전년도에 이월된 명시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으로 만 관리
				4130102	사고이월사업비	◦ 전년도에 이월된 사고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으로 만 관리
				4130103	계속비이월사업비	◦ 전년도에 이월된 계속비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으로 만 관리

II.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가. 사업별 예산구조 설정(정책사업, 단위사업)

- ▶ 세부사업명은 권장사항이며, 세부항목은 가급적 사업해설에 예시된 사업(★표시)으로 예산을 구성하게 되, 학교여건에 따라 필요시 세부항목을 세부사업명으로 사용 가능함
단, 정책사업(인적자원 운용)에 속하는 세부사업명은 전국 '공통활용'이므로 반드시 권장 세부사업명으로 편성바람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3799, 10.11.16)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 (권장)	사업 해설 (괄호 안의 ★ 부분은 학교에서 설정 가능한 세부항목 예시)	비고
인적자원 운용			○ 좌동	
교직원 보수	교원보수		○ 사립학교 정규직 교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 (★봉급, 정액수당, 부담금, 초과근무수당, 복리 후생비 등)	세부사업 전국공통
	행정직원보수		○ 사립학교 정규직 행정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 (★봉급, 정액수당, 부담금, 초과근무수당, 복리 후생비 등) ※ 학교회계직원(구 학부모회직, 교원보조원, 전산 보조원, 조리원, 과학실험보조원 등) 인건비는 제 사업비에 편성	세부사업 전국공통
	교직원대체인건비		○ 출산휴가, 장기병가 등 정규직 교직원(상용직 학교회계직원 포함)을 대체하는 기간제 교원, 행정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간제교원 인건비, 행정대체인력 인건비 등)	세부사업 전국공통
	학교운영지원비수당		○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하는 학교(중·고·특수)에서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등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교원, 행정직 등)	세부사업 전국공통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교직원연수		○ 교직원(비상용직 학교회계직원 포함)의 교수 및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 사업비 (★직무연수, 자격연수, 정보화연수, 자율연수 연구지원, 연구수업운영, 연구모임지원, 수석교사제운영 등)	세부사업 전국공통
	교직원복지		○ 교원, 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비상용직 포함)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 (★이전비, 동호회지원, 퇴임식행사, 교직원체육 행사, 교직원문화행사, 교직원포상 등)	세부사업 전국공통
	맞춤형복지		○ 교원, 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비상용직 포함)에 대한 맞춤형복지 경비 사업비 (★교원맞춤형복지비, 행정직원맞춤형복지비, 학교회계직원맞춤형복지비 등)	세부사업 전국공통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 (권장)	사업 해설 (관호 안의 ★ 부분은 학교에서 설정 가능한 세부항목 예시)	비고
학생복지 / 교육격차 해소			○ 좌동	
급식관리	학교급식운영	학교급식운영	○ 학교급식소(설)운영, 우유 유·무상 공급비 등 학교 급식운영을 위한 사업비 ○ 영양사, 조리종사원 등 급식 관련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영양사인건비, 조리사인건비, 조리원인건비(교 특재원), 조리원인건비(수익자부담재원), 조리사 및조리원대체인건비, 급식재료구입, 급식운영비, 급식기구획득비, 우유급식운영 등)	
		위탁급식운영	○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제 사업비 (★위탁급식비 등)	
기숙사 관리	기숙사운영		○ 기숙사 운영 제 사업비 (★기숙사운영비 등)	
보건 관리	학생안전관리		○ 학생 치료 등 학생 안전관리 관련 제 사업비 (★학교안전공제회관리, 응급학생후송비 등)	
	학교환경위생관리		○ 학교 학습환경, 시설 등 제반 환경위생 관련 제 사업비 (★먹는물관리, 소음측정, 공기질측정, 학교방역관리 등)	신설
	학생건강관리		○ 학생 건강진단 등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관련 제 사업비 (★학생건강검사, 교의수당 등)	
	보건실운영		○ 약품 구입 등 보건실 운영 제 사업비 (★약품구입, 보건실일반운영 등)	
교육격차 해소	저소득층자녀지원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 지원 제 사업비 로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학비지원,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지원(자유수강권 등), 정보화지원 등 (★저소득층자녀급식비,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저소 득층자녀방과후학교지원, 저소득층자녀인터넷통신비 저소득층자녀교통비지원 등)	
	특수교육대상자지원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제사업비 로 급식비 지원, 학비 지원, 정보화지원,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지원 등 (★특수교육대상자급식비지원, 특수교육대상자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방과후학교지원 등)	
	기타교육격차해소		○ 기타교육 및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제 사업비로 디문 화가정 지원, 대학생멘토링제 운영, 농산어촌연중돌 봄학교 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등 (★복식수업해소강사비, 통폐합학교통학지원, 디문화 가정지원 등)	신설
학생 장학 지원	학생장학금지원		○ 내/외부 학생 장학금 지원 제 사업비 (★학생장학금지원 등)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	졸업앨범제작		○ 졸업앨범 제작 제 사업비 (★졸업앨범제작 등)	
	학생교과서구입		○ 학생교과서 구입 제 사업비 (★학생교과서구입 등) ※ 교사용 교과서(지도서) 구입은 [단위사업: 교과활동]에 편성	
	기타학생복지		○ 교복 물려주기, 통학차량운영지원 학교 매점 관리 학생증 제작 등 기타 학생복지를 위한 제 사업비 (★학생증제작, 통학차량운영지원 등)	신설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 (권장)	사업 해설 (괄호 안의 ★ 부분은 학교에서 설정 가능한 세부항목 예시)	비고
기본적 교육활동			○ 좌동	
교과 활동		기본교수학습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교수가 표준 교육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교육과정에 명시된 모든 교과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구·설비와 재료를 구입하고 유지·관리하는 제 사업비 ○ 학습준비물 구입, 교사용 지도서 구입, 보결(대장)수업 관리 등 (★교수학습지원, 보결(대장)수업관리, 학습준비물지원 등) 	
		국어 교과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인턴교사제 운영 등) 	
		사회(역사, 도덕) 교과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역사, 도덕)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인턴교사제 운영 등) 	
		수학교과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인턴교사제 운영 등) 	
		과학(실험, 기술, 가정) 교과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실험, 기술, 가정)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인턴교사제 운영, 과학 실험보조원 인건비 등) ※ 과학의 달 행사, 과학경진대회 출전비는 [단위사업 : 특별활동]에 편성 	
		체육 교과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교구 구입 등 체육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인턴교사제 운영 등) ※ 학생체육대회비, 소년체육대회출전비는 [단위사업 : 특별활동]에 편성 	
		예술(음악, 미술) 교과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기수리비 등 예술(음악, 미술)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인턴교사제 운영 등)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교과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원어민보조교사, 외국어강사, 인턴교사제 운영 등) 	
		특수교육 교과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인턴교사제 운영 등) 	
		학력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충과정 운영, 기초학력지도, 수준별이동수업 등 학력신장에 투입되는 제 사업비 (★보충과정 운영, 기초학력지도, 수준별이동수업 등) 	
		기타교과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 교내 교과협의회 운영 등 기타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제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교과협의회운영 등)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 (권장)	사업 해설 (괄호 안의 ★ 부분은 학교에서 설정 가능한 세부항목 예시)	비고
특별 활동		환경정리활동	○ 환경정리, 청소활동 등 학교환경정리활동 제 사업비 (★ 학급환경정리, 교내외환경정리, 청소용품구입 등)	
		학교행사활동	○ 입학식, 졸업식, 경시대회, 축제, 체육대회, 사생대회, 백일장, 학예회, 각종행사 등 학생 관련 행사활동 제 사업비 (★ 입학식 행사운영, 졸업식행사운영, 과학의 달 행사, 과학경진대회, 소년체육대회, 학생체육대회, 학교축제, 학예회, 경시대회 등)	
		학생자치활동	○ 학생자치회 운영, 선도부 운영, 동아리(서클) 활동, 청소년단체 활동, 교지 및 학교신문 제작 등 학생자치활동 제 사업비 (★ 학생회활동, 동아리활동, 교지제작활동 등)	
		학생생활진로지도	○ 진로지도검사, 학생심리검사, 상담, 봉사, 계발, 발명교실 운영, 적응활동 제 사업비 (★ 진로지도활동, 학생봉사활동, 상담활동, 계발(발명)활동 등)	
재량 활동		교과재량활동	○ 논술교육, 독서교육 등 교과 심화·보충학습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 인성교육, 보건교육, 성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금연교육, 통일교육 등 범교과학습 제 사업비 (★ 보건교육, 인성교육, 심화보충교육 등)	
		기타재량활동	○ 다문화이해교육 등 주제탐구학습, 기타자율학습 소요 제 사업비 (★ 안전교육, 통일교육, 다문화교육 등)	
체험 활동		현장체험학습	○ 수학여행, 소풍, 견학, 문화탐방, 도·농간 교류 학습 등 현장체험학습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 수학여행, 소풍, 도·농간교류학습 등)	
		학생수련활동	○ 극기훈련, 야영수련, 학년별수련, 임원수련 등 학생수련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 야영수련, 학년별수련활동 등)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 (권장)	사업 해설 (괄호 안의 ★ 부분은 학교에서 설정 가능한 세부항목 예시)	비고
선택적 교육활동			○ 좌동	
방과후학교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 교과의 보충, 특별활동의 체계화, 재량활동의 일부 등 교수·학습활동의 여러 영역에 걸쳐 운영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재원의 일부가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 ○ 정규 수업 과정외 방과후 학교 운영 제 사업비 (★교과프로그램, 특기적성교육, 학부모코디네이터 등)	
		기타방과후학교 운영	○ 방과후 보육교실, 돌봄교실 운영 등 제 사업비 (★방과후학교 보육교실운영, 종일돌봄교실운영 등)	
평생교육	평생교육운영		○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체육 등 평생교육 제 사업비 (★평생교육운영비 등)	
직업교육	직업교육		○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선택적 직업교육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직업교육운영비, 산학협력연계교육 등)	
국제교육	국제교육운영		○ 외국학교와의 국제교류 등 국제교육 관련 제 사업비 (★자매결연학교운영 등)	
교기육성	운동부운영	운동부운영	○ 축구, 야구, 육상, 수영 등 전문적 운동부 운영 및 육성 등 제 사업비 (★축구부운영, 야구부운영, 육상부운영, 수영부 운영 등)	
		기악부운영	○ 전문적 기악부 운영 및 육성 등 제 사업비 (★기악부운영 등)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영재교육운영	영재교육운영	○ 영재교육운영 등 위에 제시하지 않은 선택적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영재교육운영, 학학협력연계교육, 외국어캠프 등)	
		기타선택적교육운영	○ 전문계고등학교 학생의 학원위탁교육비 등 외부 기관 및 시설로 학교교육을 일부 위탁한 경우 소요되는 제 사업비 (★위탁교육 등)	신설
교육활동지원			○ 좌동	
교무업무 운영	교무학사운영	교무학사운영	○ 교수학습에 직접 투입되지 않으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제 사업비로 출석부 구입, 교내외 학생생활지도 등 교무학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 (★교무보조원인건비, 교무학사운영, 교육활동홍보 등)	
		교육과정평가	○ 학생 평가 소요 제 사업비, 학부모 시험감독 운영 제 사업비, 학생평가 협의회 운영 제 사업비 등 교수학습 간접비 (★교육과정평가 등)	
연구학교 운영	연구학교운영		○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제 사업비 (★교과부지정, 시도교육청지정, 교육지원청지정 등)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 (권장)	사업 해설 (관호 안의 ★ 부분은 학교에서 설정 가능한 세부항목 예시)	비고
학습지원실 운영		방송실운영	○ 방송장비 구입 등 방송실 운영 제 사업비 (★방송실운영비 등)	교수학습 활동에 적합적으로 투입되지 않는 순수한 학습지원실 운영비로 소모 품구입비, 소규모 시설장비 유지비 및 관련 학교회계 직원 인건비 등을 계상
		도서관운영	○ 도서관 운영 제 사업비 (★도서구입비, 도서관운영비, 사서보조원 인건비 등)	
		상담실운영	○ 상담실 운영 제 사업비 (★상담실운영비, 상담요원 인건비 등)	
		정보화실운영	○ 정보화실 운영 제 사업비 (★학교정보화지원, 전산보조원 인건비 등)	
		공동실습소운영	○ 공동실습소 운영 제 사업비 (★공동실습소운영비 등)	
교육여건 개선		교육환경개선	○ 교수학습 및 학교행정을 위한 시설, 장비의 개선을 위한 사업비 ※ 개별부서에 제한된 노후 시설 및 장비의 개별적 교체는 해당 사업비에 편성 ○ 책·결상구입 및 교체, 사물함교체, 칠판수리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품(교구) 확충 및 교체 (★교직원PC교체, 교단선진화용교육기자재구입 책결상구입, 사물함교체, 칠판교체 교실소규모수선 보건실·급식실·도서실·과학실현대화 등)	
학교 일반운영			○ 좌동	
부서 기본 운영		부서기본운영	○ 교장실, 행정실, 교무 각 부서의 기본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 (★교장실운영, 행정실운영, 교무부운영, 연구부운영, 학생부운영 등)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	○ 방송통신고등학교 기본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 등)	
시설 장비 유지		학교시설장비유지	○ 전기/ 수도/ 통신 시설 등 학교시설 유지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용역비 등 기본적 경비 및 관리를 위한 경비를 포함하는 제 사업비 ○ 기본 시설 유지를 위한 소규모 수선 제 사업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대규모 수선비 및 시설사업비는 [단위사업 : 시설확충및개선]에 편성 (★공공요금및제세, 연료비, 시설관리용역료, 시설일반관리비, 폐기물처리, 화장실관리, 체육관관리, 다목적실관리, 당직관리 등)	신설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 (권장)	사업 해설 (관호 안의 ★ 부분은 학교에서 설정 가능한 세부항목 예시)	비고
일반행정 관리	행정지원인력운용	행정지원인력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사무)보조원(구 학부모회직 포함) 인건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행정지원을 위한 인력 제 사업비 (★학교회계직원(구 학부모회직) 인건비, 행정(사무)보조원 인건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사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사무용품 구입, 사무용기기 구입 및 수리 등 일반행정 사무관리를 위한 제 사업비 (★사무용품구입, 업무용도서구입 간행물구독 제정보증수수료, 사무용기기관리 등) 	
학교운영 협력	학교운영위원회운영	학교운영위원회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 (★학교운영위원회운영 등) 	
		유관기관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제 사업비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관내기관체육대회 등) 	
학부모 지원	학부모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 학교참여를 위한 학부모회 지원 및 자녀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등 학부모지원 제 사업비 (★학부모회운영, 학부모교육 등) ※ 학부모코디네이터운영은 [단위사업 : 방과후학교운영]에 편성 ※ 학부모시험감독운영은 [단위사업 : 교무업무운영]에 편성 	신설
학교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시설확충 및 개선	시설확충및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입찰(2인 이상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하는 경우 등 호우피해 복구공사, 교실 개축 등 학교시설 확충 및 개선 (★호우긴급피해복구공사, 조경공사, 교실증개축 등) 	
학교 재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반환금	반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 목적사업비 등 집행 잔액 반환 (★반환금) 	
	예비비	예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비 (★예비비) 	

나. 학교회계 세출 예산서 표준안

- ▶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3799(10.11.16)
- ▶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회계 정책-단위사업 구분]을 적용하여 작성된 표준안임
- ▶ (중요사항) [정책사업 : 인적자원운용)에 속하는 세부사업명은 전국 [공통활용]이므로 반드시 변경된 세부사업명으로 편성 !!!

사업						산출기초(원)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부항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비목	산출내역	산출식	
인적자원운용								
	교직원 보수							
		교직원대체인건비						
		기간제교원	1100201 계약직교원인건비		인건비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3200401 기타직국민연금부담금		국민연금기관부담금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3200402 기타직전경보험부담금		전경보험기관부담금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3200404 기타직고용보험부담금		고용보험기관부담금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3200403 기타직산업체해부담금		산재보험기관부담금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행정대체인력	110030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건비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3200501 기간제근로자국민연금부담금		국민연금기관부담금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3200502 기간제근로자전경보험부담금		전경보험기관부담금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3200504 기간제근로자고용보험부담금		고용보험기관부담금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3200503 기간제근로자산업체부담금		산재보험기관부담금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학교운영지원비수당							
		교원	1100146 교원연구비		교원연구비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1100147 직책수당		직책수당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1100148 관리수당		관리수당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행정직	1100147 직책수당		직책수당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1100148 관리수당		관리수당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교직원연수							
		직무연수	2200101 공무원출장여비		여비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자격연수	2200101 공무원출장여비		여비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정보화연수	2200101 공무원출장여비		여비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122 교육경비		교육등록비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자율연수	2400104 직원능력개발비		여비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수석교사제운영	2200101 공무원출장여비		여비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교직원복지							
		이전비	2200103 이전여비		이전비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동호회지원	2400102 동호회지원비		동호회운영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교직원체육행사	2100126 행사용품비		행사용품구입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104 상품구입비		상품구입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300101 기관운영경비		식비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교직원퇴임식	2100126 행사용품비		행사용품구입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300101	기관운영경비	식비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교직원문화팀*방	2300101	공무원출장여비	여비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맞춤형복지					
		교원	2400201	맞춤형복지비	맞춤형복지비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행정직원	2400201	맞춤형복지비	맞춤형복지비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학교회계직원	2400201	맞춤형복지비	맞춤형복지비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학생복지/ 교육격차해소							
	급식관리						
		학교급식운영					
		영양사인건비 ※ 학교회계직원, 중· 무기계 약국로 "원가통계비목 "1100202"를 사용	110030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연봉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110030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초과근무수당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110030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퇴직(적립)금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110030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대체인력인건비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3200501	기간제근로자국민연금부담금	국민연금기반부담금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3200502	기간제근로자건강보험부담금	건강보험기반부담금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3200504	기간제근로자고용보험부담금	고용보험기반부담금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3200503	기간제근로자신업체제보험료	산재보험기반부담금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조리사인건비	110030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연봉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110030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초과근무수당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110030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퇴직(적립)금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3200501	기간제근로자국민연금부담금	국민연금기반부담금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3200502	기간제근로자건강보험부담금	건강보험기반부담금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3200504	기간제근로자고용보험부담금	고용보험기반부담금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3200503	기간제근로자신업체제보험료	산재보험기반부담금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조리원인건비(교특재원)	110030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연봉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110030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초과근무수당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110030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퇴직(적립)금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3200501	기간제근로자국민연금부담금	국민연금기반부담금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3200502	기간제근로자건강보험부담금	건강보험기반부담금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3200504	기간제근로자고용보험부담금	고용보험기반부담금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3200503	기간제근로자신업체제보보험료	산재보험기반부담금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조리원인건비(수의사부 담재원)	110030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연봉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110030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초과근무수당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110030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퇴직(적립)금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3200501	기간제근로자국민연금부담금	국민연금기반부담금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3200502	기간제근로자건강보험부담금	건강보험기반부담금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3200504	기간제근로자고용보험부담금	고용보험기반부담금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3200503	기간제근로자신업체제보보험료	산재보험기반부담금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조리사및조리원대체인 건비	110030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조리사및조리원대체인건비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1104	급식용식재료비	식품비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1106	급식용우유비	우유비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급식운영비	2100130	급식소모품비	급식소모품구입비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1321	덤웨이터관리위탁용역비	덤웨이터관리위탁용역비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205	전기요금	전기요금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207	상하수도료	상하수도료	(단가)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802	취사용기연료비	가스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214	보험료	기스책임배상보험료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137	안전검사수수료	유전자검사수수료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137	안전검사수수료	기스안전검사수수료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901	시설물소규모수선비	급식시설소규모수선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급식기구화충비	4300116	기타접기기취득비	밥솥운반차구입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위탁급식운영						
		위탁급식운영	2101318	급식사업위탁용역비	위탁급식운영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기숙사관리						
	기숙사운영						
		기숙사운영비	2100901	시설물소규모수선비	시설물수리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205	전기요금	첨대교체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207	상하수도료	시설물수리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보건관리						
	학생안전관리						
		학교안전공제회관리	3200602	학교안전공제회비	학교안전공제회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응급학생후송	2200102	비공무원출장여비	부상학생후송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학교환경위생관리						
		먹는물관리	2101328	정수기관리위탁용역비	정수기유지보수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119	수질검사수수료	수질검사료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1501	기타일반수용비	재수병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1340	물탱크및 저수조관리위탁용역비	저수조청소료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공기질관리	2100136	환경검사수수료	공기질측정검사수수료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학교방역관리	2101336	방역소독위탁용역비	교사내소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학생건강관리						
		학생건강검사	2100116	건강검사수수료	건강검사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116	건강검사수수료	구강검사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116	건강검사수수료	소변검사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교의수당	2100611	교의수당	교의수당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보건실운영						
		약품구입	2100124	소모성의료기구비	얼음깨구입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123	약품구입비	약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보건실일반운영	2100304	세탁비	침구세탁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4300103	기계장치취득비	청소기구입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교육격차 해소						
	저소득층자녀지원						
		저소득층자녀급식비	3100114	급식비지원금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3100111	학생학비지원금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저소득층자녀방과후학교지원	3100112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지원금	저소득층자녀방과후학교지원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저소득층자녀인터넷통신비	3100116	정보화비지원금	저소득층자녀인터넷통신비지원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저소득층자녀교통비지원	3100117	생활비지원금	저소득층자녀교통비지원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저소득층자녀기숙사비지원	3100115	기숙사비지원금	저소득층자녀기숙사비지원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특수교육대상자지원						

		특수교육대상자급식비 지원	3100114	급식비지원금	특수교육대상자급식비지원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특수교육대상자통학비 지원	3100117	생활비지원금	특수교육대상자통학비지원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특수교육대상자방과후 학교지원	3100112	방과후학교활동비 지원금	특수교육대상자방과후학교 지원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기타교육격차해소					
		복식수업해소강사비	2100605	강사수당	강사수당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동폐합학교등학지원	3100117	생활비지원금	원거리학생교통비지원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3100117	생활비지원금	원거리학생하숙비지원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학생 장학 지원					
		학생장학금지원					
		학생장학금지원	3100102	장학금및학자금	장학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					
		졸업앨범 제작					
		졸업앨범제작	2101203	졸업앨범비	졸업앨범제작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학생교과서구입					
		학생교과서구입	2101201	교과서구입비	교과서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기타학생복지					
		통학차량운영지원	2100214	보험료	자동차보험료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215	자동차세	자동차세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1001	차량유류대	연료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1004	차량소규모수선비	통학차량수리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학생증제작	2100127	교구용소모품비	학생증제작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기본적교육활동					
		교과 활동					
		기본교수학습활동지원					
		교수학습지원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교육용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106	도서구입비	교사용지도서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141	교육용프로그램사용료	인터넷사이트이용료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4300136	교구용기기취득비	문자인식스캐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기타교수학습자료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보결(대강)수업권리	2100608	수업보결수당	보결(대강)수당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학습준비물지원	2100128	학습준비물구입비	학습준비물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국어교과활동					
		교과운영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교구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교육용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학습준비물지원	2100128	학습준비물구입비	학습준비물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인턴교사계운영	1100201	계약직교원인건비	인턴교사인건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사회(역사,도덕)교과활동					
		교과운영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교구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교육용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학습준비물지원	2100128	학습준비물구입비	학습준비물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인턴교사계운영	1100201	계약직교원인건비	인턴교사인건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수학교과활동					
		교과운영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교구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교육용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학습준비물지원	2100128	학습준비물구입비	학습준비물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인턴교사계운영	1100201	계약직교원인건비	인턴교사인건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학습준비물지원	2100128	학습준비물구입비	학습준비물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인턴교사계운영	1100201	계약직교원인건비	인턴교사인건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과학(설과,기술,가정)교과활동					
		과학실험보조원인건비	110030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연봉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110030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초과근무수당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110030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퇴직(직립)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3200501	기간제근로자국민연금부담금	국민연금기관부담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3200502	기간제근로자간강보험부담금	간강보험기관부담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3200504	기간제근로자고용보험부담금	고용보험기관부담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3200503	기간제근로자신업제해보험료	신재보험기관부담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교과운영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교구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교육용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1103	실험설습용재료비	실험재료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4300123	교구용기타설립장비취득비	설립장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학습준비물지원	2100128	학습준비물구입비	학습준비물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인턴교사계운영	1100201	계약직교원인건비	인턴교사인건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체육교과활동					
		교과운영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축구공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배구공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농구꼴대그물당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교육용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학습준비물지원	2100128	학습준비물구입비	학습준비물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인턴교사계운영	1100201	계약직교원인건비	인턴교사인건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예술(음악,미술)교과활동					
		교과운영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교구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교육용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학습준비물지원	2100128	학습준비물구입비	학습준비물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인턴교사계운영	1100201	계약직교원인건비	인턴교사인건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외국어(영어,제2외국어)교과활동					
		원어민보조교사관리	3100122	원어민강사경비	원어민보조교사관련경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교과운영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교구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교육용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학습준비물지원	2100128	학습준비물구입비	학습준비물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인턴교사계운영	1100201	계약직교원인건비	인턴교사인건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특수교육교과활동					
		교과운영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교구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교육용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학습준비물지원	2100128	학습준비물구입비	학습준비물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인턴교사계운영	1100201	계약직교원인건비	인턴교사인건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학력신장					
		보충교정운영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교구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교육용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기초학력지도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교구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교육용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수준별이동수업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교구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교육용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기타교과활동					
		교과운영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교구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교육용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교과협의회운영	2300103	교직원협의회경비	교과별운영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300103	교직원협의회경비	학년별운영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특별활동						
		환경정리활동					
		학급환경정리	2100908	시설관리소모품비	교실환경정리용품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교내외환경정리	2100908	시설관리소모품비	교내외환경정리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청소용품구입	2100908	시설관리소모품비	청소용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각종행사활동						
		입학식행사운영	2100216	행사용품비	행사용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300101	기관운영경비	내빈접대용다과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졸업식행사운영	2100216	행사용품비	행사용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300101	기관운영경비	내빈접대용다과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학생체육대회	2100216	행사용품비	행사용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300101	기관운영경비	내빈접대용다과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학교축제	2100216	행사용품비	행사용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300101	기관운영경비	내빈접대용다과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학예회	2100216	행사용품비	행사용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300101	기관운영경비	내빈접대용다과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경시대회	2100216	행사용품비	행사용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1211	학생교육훈련비	전국경시대회출전대비연습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1212	학생대회출전비	전국경시대회출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학생자치활동						
		학생회활동	2101217	학생자치활동비	학생회활동지원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동아리활동	2101217	학생자치활동비	학생동아리지원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교지제작활동	2101217	학생자치활동비	교지제작활동지원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1217	학생자치활동비	교제제작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학생생활진로지도						
		진로지도활동	2100610	교육활동강사료	강사료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학생봉사활동	2100610	교육활동강사료	강사료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상담활동	2100610	교육활동강사료	강사료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계발(발명)활동	2100610	교육활동강사료	강사료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재량활동						
		교과재량활동					
		보건교육	2100610	교육활동강사료	성교육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610	교육활동강사료	건강교육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610	교육활동강사료	양성평등교육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610	교육활동강사료	흡연예방교육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인성교육	2100610	교육활동강사료	학생인성교육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610	교육활동강사료	학생예절교육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610	교육활동강사료	학교폭력예방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심화보충교육	2100610	교육활동강사료	독서교육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610	교육활동강사료	논술교육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기타재량활동					
		안전교육	2100610	교육활동강사료	교통안전교육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610	교육활동강사료	소방안전교육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통일교육	2100610	교육활동강사료	통일교육강사료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다문화교육	2100610	교육활동강사료	다문화교육강사료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체험활동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2101204	교육활동숙박비	숙박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1205	교육활동식비	식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1206	교육활동차량임차료	차량임차료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1209	기타교육활동체경비	입장료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200101	공무원출장여비	인솔교사여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소풍	2101214	교육활동숙박비	숙박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1205	교육활동식비	식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1206	교육활동차량임차료	차량임차료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1209	기타교육활동체경비	입장료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200101	공무원출장여비	인솔교사여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도농간교류학습						
		2101204	교육활동숙박비	숙박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1205	교육활동식비	식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1206	교육활동차량임차료	차량임차료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1209	기타교육활동체경비	입장료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200101	공무원출장여비	인솔교사여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학생수련활동						
		야영수련	2101204	교육활동숙박비	숙박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1205	교육활동식비	식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1206	교육활동차량임차료	차량임차료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1209	기타교육활동체경비	입장료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200101	공무원출장여비	인솔교사여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학년별수련활동	2101204	교육활동숙박비	숙박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1205	교육활동식비	식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1206	교육활동차량임차료	차량임차료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1209	기타교육활동체경비	입장료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200101	공무원출장여비	인솔교사여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선택적 교육활동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학교운영					
		교과프로그램	2100609	방과후학교강사료	강사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특기격성교육	2100609	방과후학교강사료	강사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3100112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지원금	강사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교육용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실습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학부모코디네이터	2100607	기타운영수당	인건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기타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보육교실운영	1100301	기간체근로자인건비	인건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회수(월,일,회 등)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교육용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종일돌봄교육실운영	210030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건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교육용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평생교육						
	평생교육운영						
		평생교육운영비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교육용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610	교육활동강사료	강사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직업교육						
	직업교육운영						
		직업교육운영비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교육용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610	교육활동강사료	강사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국제교육						
	국제교육운영						
		자매결연학교운영	2200201	공무원국외출장여비	자매결연학교방문출장여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교기육성						
	운동부운영						
		축구부운영	2101211	학생교육훈련비	훈련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1212	학생대회출전비	출전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야구부운영	2101211	학생교육훈련비	훈련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1212	학생대회출전비	출전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육상부운영	2101211	학생교육훈련비	훈련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1212	학생대회출전비	출전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수영부운영	2101211	학생교육훈련비	훈련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1212	학생대회출전비	출전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기악부운영						
		기악부운영	2101211	학생교육훈련비	훈련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1212	학생대회출전비	출전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기타선택적교육활동						
	영재교육운영						
		영재교육운영	2100610	교육활동강사료	강사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기타선택적교육운영						
		위탁교육운영	2100610	교육활동강사료	강사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번설유치원운영						
	유치원교과활동						
		교과활동	2100102	교구소모품비	교구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교육용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유치원운영						
		유치원운영	2100101	사무용품비	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103	인쇄물및유인물제작비	교무 학사용인쇄물제작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200101	공무원출장여비	관내출장여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200101	공무원출장여비	관외출장여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300103	교직원협의회경비	유치원교원협의회운영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교육활동지원						
	교무업무운영						

		교무학사운영				
		교무보조원인건비	1100202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연봉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1100202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초과근무수당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1100202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퇴직(격류)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3200401	기타직국민연금부담금	국민연금기관부담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3200402	기타직건강보험부담금	건강보험기관부담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3200404	기타직고용보험부담금	고용보험기관부담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3200403	기타직산업체보합료	산재보험기관부담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교무학사운영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출석부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103	인쇄물및유인물제작비	교육계획서제작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103	인쇄물및유인물제작비	학교요람제작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상장용지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604	시험권리비	학부모시험감독운영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교육활동홍보	2101501	기타일반수용비	지역신문홍보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103	인쇄물및유인물제작비	학교홍보물발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교육과정평가				
		교육과정평가	2300103	평가협의회경비	학생평가협의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연구학교 운영				
		연구학교운영				
		교과부지정	2300201	사업추진경비	연구결과발표회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시도교육청지정	2300201	사업추진경비	연구결과발표회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교육지원청지정	2300201	사업추진경비	연구결과발표회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학습지원실운영				
		방송실운영				
		방송실운영비	2100101	사무용품비	사무용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904	교구기자재소규모수선비	방송장비수리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4300136	교구용기기취득비	방송장비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도서관운영				
		도서구입비	4300133	도서취득비	도서구입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도서관운영비	2100101	사무용품비	사무용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4300136	교구용기기취득비	도서검색용컴퓨터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사서보조원인건비	110030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연봉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110030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초과근무수당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110030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퇴직(격류)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3200501	기간제근로자국민연금부담금	국민연금기관부담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3200502	기간제근로자건강보험부담금	건강보험기관부담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3200504	기간제근로자고용보험부담금	고용보험기관부담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3200503	기간제근로자산업체보합료	산재보험기관부담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상담실운영				
		상담실운영비	2100101	사무용품비	사무용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4300110	사무용접기취득비	상담실의자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정보화실운영				
		전산보조원인건비	110030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연봉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110030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초과근무수당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110030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퇴직(격류)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3200501	기간제근로자국민연금부담금	국민연금기판부담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3200502	기간제근로자건강보험부담금	건강보험기판부담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3200504	기간제근로자고용보험부담금	고용보험기판부담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3200503	기간제근로자신업체보조료	신제보조기판부담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학교정보화지원		2100101	사무용품비	사무용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4300136	교구용기기취득비	컴퓨터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4300136	교구용기기취득비	컴퓨터책상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125	법용소프트웨어구입비	소프트웨어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1343	홈페이지유지관리위탁용역비	학교홈페이지관리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904	교구기자재소규모수선비	컴퓨터등장비수리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공동설습소운영						
		공동설습소운영비	2100101	사무용품비	사무용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4300136	교구용기기취득비	장비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교육여건 개선						
	교육환경개선						
		교직원PC교체	4300136	교구용기기취득비	PC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책걸상구입	4300137	교구용집기취득비	책상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4300137	교구용집기취득비	걸상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사물함교체	4300137	교구용집기취득비	사물함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칠판교체	4300137	교구용집기취득비	칠판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교실소규모수선	2100901	시설물소규모수선비	소규모수선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학교 일반운영						
	부서 기본 운영						
	교장실운영						
		교장실운영	2100101	사무용품비	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300101	기관운영경비	집대용음료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200101	공무원출장여비	관내출장여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200101	공무원출장여비	관외출장여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500201	직책급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300107	기관장격려비	행사격려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300108	기관장경조사비	교직원경조사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300103	교직원협의회경비	교직원간담회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행정실운영						
		행정실운영	2100101	사무용품비	사무용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103	인쇄물및유인물제작비	행정실행사용현수막제작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200101	공무원출장여비	관내출장여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200101	공무원출장여비	관외출장여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300103	교직원협의회경비	행정실협의회 간담회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	2100101	사무용품비	사무용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200101	공무원출장여비	관내출장여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200101	공무원출장여비	관외출장여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300103	교직원협의회경비	방송통신고등학교협의회 간담회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시설장비유지						
		학교시설장비유지					

		공공요금및제세	2100201	우편요금	우편요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202	전화요금	전화요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203	인터넷통신요금	인터넷통신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205	전기요금	전기요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206	방송수신료	케이블방송사용료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207	상하수도료	상하수도요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217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연료비	2100801	냉난방기연료비	냉난방용 기기 유류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220	지역난방료	난방유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208	도시가스료	냉난방용 도시가스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시설관리용역료	2101331	전기안전관리위탁용역비	전기안전관리용역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1322	전기시설관리위탁용역비	전기시설관리용역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1323	소방시설관리위탁용역비	소방시설관리용역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1325	승강기관리위탁용역비	승강기관리용역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1341	오수정화조관리위탁용역비	오수정화조관리용역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시설일반관리비	2100908	시설관리소모품	시설소모품구입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901	시설물소규모수선비	소규모수선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폐기물처리	2100138	폐기물처리수수료	폐기물처리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화장실관리	2101335	화장실관리위탁용역비	화장실청소용역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110030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화장실청소원인건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1335	화장실관리위탁용역비	화장실관리용역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901	시설물소규모수선비	소규모수선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1341	오수정화조관리위탁용역비	오수정화조청소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908	시설관리소모품	화장실소모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체육관관리	2100901	시설물소규모수선비	소규모수선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다목적실관리	2100901	시설물소규모수선비	소규모수선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당직관리	2101333	무인기계경비위탁용역비	무인기계경비용역료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1332	유인경비위탁용역비	유인경비용역료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603	일숙직비	당직자인건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일반행정 관리						
	행정자원인력운용						
	※ 학교 회계직원에 대한 호봉제 직원에 대한 원가통계비 혹은 "무기계약근로 자인건비"를 사용	행정(사무)보조원 인건비	110030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연봉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110030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초과근무수당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110030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퇴직(적립)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3200501	기간제근로자국민연금부담금	국민연금기판부담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3200502	기간제근로자건강보험부담금	건강보험기판부담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3200504	기간제근로자고용보험부담금	고용보험기판부담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3200503	기간제근로자산업재해보험료	산재보험기판부담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공익근무요원관리	공익근무요원관리	3100110	공익근무요원보수	보수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3100110	공익근무요원보수	중식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3100110	공익근무요원보수	교통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3100110	공익근무요원보수	과복비(공익근무요원근무복)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일반행정사무관리						
	사무용품구입	사무용품비	2100101	사무용품비	사무용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101	사무용품비	프린터토너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업무용 도서구입	2100106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간행물구독	2100105	간행물구독료	간행물구독료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재정보증수수료	2100214	보험료	재정보증수수료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당직실침구류세탁	2100304	세탁비	당직실침구류세탁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사무용기기관리	2100902	기계장치소규모수선비	사무용기기유지보수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4300109	사무용기기취득비	백스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4300109	사무용기기취득비	복사기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학교운영협력						
		학교운영위원회운영					
		학교운영위원회운영	2100602	위원회참석설비경비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설비(경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300105	학교운영위원회경비	학교운영위원회 간담회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300206	학교운영위원회행사경비	학교운영위원회 주최행사 식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유관기관협력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2300101	기관운영경비	지역유관기관 간담회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300101	기관운영경비	관내유관기관 세우대회 경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학부모지원						
		학부모지원					
		학부모회 운영비	2100126	행사용품비	학부모회 개최행사용품 구입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100103	인쇄물및유인물제작비	학부모회 개최행사 인쇄물 제작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300104	학부모협의회경비	학부모회 협의회 개최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학부모교육	2300205	학부모행사경비	학부모대상 학교행사 식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3100108	민간외래강사료	학부모대상 학교행사 강사료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300102	비공무원출장여비	학부모대상 학교교육 참여사업 지원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2300205	학부모행사경비	학부모교육 다과구입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학교시설 확충						
		시설확충 및 개선					
		시설확충및개선					
		호우긴급피해복구공사	4200302	토목시설비	호우피해복구토목공사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조경공사	4200309	조경공사시설비	조경공사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교실증축	4200301	건축시설비	교실증축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4200303	전기시설비	증축교실전기공사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4200304	정보통신시설비	증축교실통신공사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4200305	소방시설비	증축교실소방공사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4200306	기계설비시설비	증축교설기계설비공사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학교재무활동						
		반환금					
		반환금					
		반환금	7100203	기초자치단체보조금반환	반환금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7100101	예비비	예비비	(단기)원<물량(명,개 등)>화수(월,일,회 등)	

다. 사업별 예산구조 설정(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

목	세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 해설
100	인건비			
	110	인건비		
	110-01	보수		
		1100101	봉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급(고정급 및 성과급 적용 연봉월액 포함)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 4조 및 제32조에 의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봉급
		1100146	교원연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연구비, 직책연구비, 특수목적교 교원연구비, 수업연구비(초등은 제외) 교원연구비 가산금, 학생지도비 포함
		1100147	직책수당	직책수당
		1100148	관리수당	관리수당
		1100159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110-02	기타직보수		
		1100201	계약직교원인건비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전임강사 인건비
		1100202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정규직 인건비 (상용 근로자)
	110-03	기간제근로자보수		
		110030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인부임(일용 근로자)
200	물건비			
	210	운영비		
	210-01	일반수용비		
		2100101	사무용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기구, 용지구입, 토너구입 등 통상적인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사무용품비
		2100127	교육용소모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용 소모품이 아닌 교수학습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교구(교육)용소모품비 교구성 소모품이 포함되더라도 용도상 교구로 별도 관리(관리대장)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제 교육용 소모품 구입비를 말함 단, 교구(교육)용비품은 성격에 맞게 430-0목에 계상

목	세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 해설
		2100128	학습준비물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진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학습준비물 구입비 학생이 준비해야 하는 학습준비물을 학교가 구매 비치하여 교실수업에서 공동사용하게 하거나 소모하는 학습준비물 용도가 명확한 소모품 구입비
		2100130	급식소모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식 식재료가 아닌 고무장갑 등 급식용 소모품 구입비
		2100126	행사용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행정기관 단위의 워크숍 등 각종행사용품 구입비, 학교의 각종 행사용품 구입비
		2100103	인쇄물및유인물제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팜플렛, 현수막 등 기타의 성격 포함
		2100104	상품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상품구입비
		2100105	간행물구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보, 정기 및 비정기 간행물
		2100106	도서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등은 430-01목에 계상
		2100107	공고및광고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 또는 일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해당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비목에 계상
		2100108	속기·원고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기료, 원고료
		2100110	수임및자문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수임료 및 회계감사 세무 조정 등 자문료
		2100131	방역소독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당기간 위탁계약에 의하지 않은 단기간, 일시적 방역소독 용역에 따른 반대급부
		2100132	조경관리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당기간 위탁계약에 의하지 않은 단기간, 일시적 조경관리 용역에 따른 반대급부
		2100133	학교청소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당기간 위탁계약에 의하지 않은 단기간, 일시적 학교청소 용역에 따른 반대급부
		2100134	시설관리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당기간 위탁계약에 의하지 않은 단기간, 일시적 시설관리 용역에 따른 반대급부
		2100111	기타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에서 나열하지 않은 번역료, 전사료, 검정료, 시험료 각종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100112	등기및소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기 및 소송료(인지세 및 법정수수료) 단, 자산 취득에 따른 등기비는 해당과목에 계상
		2100113	업무대행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업무대행 수수료

목	세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 해설
		2100114	전자금융수수료	◦ 전자금융 수수료
		2100135	전자계약수수료	◦ g2b, 온비드 등 전자계약에 따른 수수료
		2100115	적성검사수수료	◦ 적성검사 수수료
		2100116	건강검사수수료	◦ 건강검사 수수료
		2100117	표준화검사수수료	◦ 표준화검사 수수료
		2100118	학력평가수수료	◦ 학력평가 수수료
		2100119	수질검사수수료	◦ 수질검사 수수료
		2100136	환경검사수수료	◦ 환경검사 수수료
		2100137	안전검사수수료	◦ 가스정기검사, 가스안전정밀검사, 전기안전검사, 급식소 취사기 안전검사 등 학교 시설, 장비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
		2100138	폐기물처리수수료	◦ 폐기물품, 폐기물 처리 수수료 ◦ 읍면동 주민자치센타에 위탁처리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 ◦ 계약에 의한 계속적, 반복적 폐기물 처리 위탁용역은 210-13목에 계상
		2100139	폐수용액처리수수료	◦ 과학실 실험실습 폐수용액을 위탁 용역이 아닌 방법으로 처리 시 수수료
		2100120	기타수수료	◦ 측량수수료 및 감정수수료 (토지 취득에 따른 측량수수료는 410-01목에 계상) ◦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각종 수수료
		2100121	보관운송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외자조작비,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단, 철도요금으로 지불되는 경비는 210-02목에 계상)
		2100122	교육경비	◦ 공무원의 교육경비 및 교육등록비
		2100123	약품구입비	◦ 의무실, 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소모성 약품
		2100124	소모성의료기구비	◦ 자체 의료시설의 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2100140	범용프로그램사용료	◦ 프로그램의 소유권리는 없고 일정기간 사용권리만 있는 사무용 프로그램의 사용료 ◦ 프로그램의 범위는 물리적 소프트웨어 및 원격 웹사이트 프로그램 사용료를 포함 ◦ 무형 자산성 프로그램의 소유권 취득은 440-01목에 계상
		2100141	교육용프로그램사용료	◦ 프로그램의 소유권리는 없고 일정기간 사용권리만 있는 교육용 프로그램의 사용료 ◦ 프로그램의 범위는 물리적 소프트웨어 및 원격 웹사이트 프로그램 사용료를 포함

목	세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형 자산성 프로그램의 소유권 취득은 440-01 목에 계상
		2100125	범용소프트웨어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단,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무형자산성 프로그램의 소유권 취득은 440-01 목에 계상)
		2100142	교육용소프트웨어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형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무형 자산성 프로그램의 소유권 취득은 440-01 목에 계상
			210-02 공공요금및제세	
		2100201	우편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요금
		2100202	전화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요금(전보료 포함)
		2100203	인터넷통신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통신요금
		2100204	철도화물운송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화물운송요금
		2100205	전기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요금
		2100206	방송수신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성방송, 유선방송수신료
		2100207	상하수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하수도료
		2100208	도시가스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가스료
		2100220	지역난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난방료
		2100209	오물수거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물수거료
		2100210	기타공공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공공요금
		2100213	각종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담하는 제세 및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2100214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보험료 (자동차, 회계보증,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등)
		2100215	자동차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세
		2100217	환경개선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개선부담금
		2100219	기타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과 체당금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ESCO)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상기 항목 나열되지 않은 기타 제세

목	세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 해설
210-03 피복비				
			2100301 피복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훈련기관에서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피복비 및 민간인에게 대여하는 피복비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2100302 피복대여비	피복대여비
			2100303 침구구입비	당직용 침구 구입 등 경비
			2100304 세탁비	침구 및 커튼 등 피복류 세탁비
210-04 급량비				
			2100401 주·부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2100402 합숙숙박비	합숙인 경우에는 상기이외의 숙박비를 포함
			2100403 주·부식물생산제경비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2100404 기타급량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 및 부식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도구의 구입비, 단, 부식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 계상할 수 없음
210-05 특근매식비				
			2100501 기본특근매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자 매식비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의 매식비
210-06 운영수당				
			2100601 위원회참석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참석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 수당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2100602 위원회참석실비경비	위원회참석시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지급 경비
			2100603 일·숙직비	일·숙직비
			2100604 시험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 단,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고사 중 당해기 관 교관요원이 출제, 채점 및 문제선정, 감시, 문제 편집·편찬을 하는 경우는 지급제외 출제 및 심사수당 등

목	세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 해설
		2100605	강사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직장교육 외래강사료 (자체교육 포함) 단, 민간인인 경우 310-01목에 계상 - 교직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신분의 외래 강사 수당
		2100606	강사설비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직장교육 외래강사 (자체교육 포함) 교통비 및 숙박비 등 설비지급 경비 . 단 ,민간인인 경우 310-01목에 계상 - 교직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신분의 외래 강사 수당
		2100608	수업보결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보결에 따른 보결수당, 대강수당 등 인건비성 보수가 아닌 일시적 보결 수당
		2100609	방과후학교강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강의수당 등 강사료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에 외부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어도 수업제공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강의수당으로 인정하여 교직원, 민간인 강사를 모두 포함하여 계상
		2100610	교육활동강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외 각종 학생 교육활동 관련 강의수당 등 강사료 - 성교육, 보건, 진로, 폭력예방교육 등 공무원, 민간인 구분없이 학생교육을 위해 제공된 강의에 원고료 등 포함 계상
		2100611	교의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건강검진 등에 따른 교의수당
		2100607	기타운영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운영수당
	210-07 임차료			
		2100701	토지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임차료
		2100702	시설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계약에 의한 건물임차료(일시 임차료 포함) 물건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2100703	기계장치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100704	집기비품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계약에 의한 사무기기, 집기 비품 임차료
		2100705	교구·기자재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계약에 의한 교구·기자재 임차료
		2100706	통학차량외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기관 차량임차 포함
		2100707	통학차량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학차량임차
		2100708	자산운용리스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 운용 리스료
		2100709	기타자산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자산 임차료
	210-08 연료비			

목	세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 해설
0	2100801	냉난방기연료비	◦ 냉난방용 LPG 및 유류(단,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난방 연료비는 210-02목에 계상)	
	2100802	취사용기연료비	◦ 취사용 LPG 및 유류(지역난방 및 도시가스 이용한 난방시설은 210-02목에 계상), 취사용으로 별도 구분이 명확한 경우(급식실 취사용기 연료비)	
210-09 시설장비유지비				
2100901	시설물소규모수선비	◦ 시설물소규모수선비		
	2100902	기계장치소규모수선비	◦ 기계장치 소규모수선비	
	2100903	집기비품소규모수선비	◦ 집기비품 소규모수선비	
	2100904	교구·기자재소규모수선비	◦ 교구·기자재 소규모수선비	
	2100905	박물관유물소규모수선비	◦ 박물관 유물(유산자산)에 대한 수선유지비	
	2100907	입목죽소규모수선비	◦ 입목죽에 대한 소규모 수선유지비	
	2100908	시설관리소모품비	◦ 학교시설관리 소모품 구입비	
	2100906	기타자산소규모수선비	◦ 기타 자산 소규모수선비	
210-10 차량선박비				
2101001	차량유류대	◦ 운반 건설 기계 포함		
	2101002	선박유류대	◦ 선박 유류대	
	2101003	항공기유류대	◦ 항공기 유류대	
	2101004	차량소규모수선비	◦ 운반 건설 기계 포함. 단,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400목에 계상	
	2101005	선박소규모수선비	◦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400목에 계상	
	2101006	항공기소규모수선비	◦ 항공기 소규모 수선비	
	2101007	차량선박소모품비	◦ 차량, 선박(선구비), 항공기에 대한 소모품비	
210-11 재료비				
2101101	사업용재료비	◦ 사업용으로 구매하는 각종 재료비 - 재료,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단, 재물조사대		

목	세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 해설
				<p>상 물품(소모성물품은 제외)은 430-0목에,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 등은 210-09목에 계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 -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 사료 구입비
		2101102	시험연구용-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연구용으로 구매하는 각종 재료비 - 시험연구용재료, 시약, 시료 구입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소모성물품은 제외)은 430-01 목에,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 등은 210-09목에 계상 -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 사료 구입비
		2101103	실험실습용-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실습용으로 구매하는 각종 재료비 - 실험실습재료, 시약, 시료 구입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소모성물품은 제외)은 430-01 목에,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 등은 210-09목에 계상 -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 사료 구입비
		2101104	급식용-식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시설 학교에서 직영할 경우 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비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가사실습용 식재료는 실험실습용 재료비에 계상
		2101106	급식용-우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식용 우유 등 학생들에게 단체 보급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우유비
		2101107	간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식 재료비 및 간식 구입비 급식에 포함되는 간식은 급식 식재료비로 포함하여 계상 ◦ 제 훈련, 학생 단체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간식 등은 해당 제 과목으로 계상
		2101105	기타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이외의 기타 재료비
		210-12 교육운영비		
		2101201	교과서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무상지원에 따른 학생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구입비
		2101203	졸업앨범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앨범 제작, 구입비 ◦ 중이류 앨범 및 CD 등 기타 테마식 졸업앨범제작, 구입비 포함
		2101204	교육활동숙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체험학습, 테마식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학생 단체교육활동에 따른 숙박비 숙박시설에서 식사까지 함께 계약하는 경우엔 숙박비에 포함

목	세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 해설
		2101205	교육활동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체험학습, 테마식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학생 단체교육활동에 따른 식비
		2101206	교육활동차량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체험 학습 등 학생 교육활동을 직영으로 운영 시 수송차량 임차료 단기 현장체험 학습이 아닌 통학차량 등 장기 차량 임차는 210-07에 계상
		2101207	교육활동교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행기표, 뱃삯, 기차삯 등 임차계약에 의하지 않은 학생 단체 교육활동 교통비
		2101208	교육활동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체험학습 등 학생 단체 교육활동을 직영이 아닌 외부 용역에 의한 경우
		2101209	기타교육활동제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단체 교육활동 관련한 입장료 및 관람료 등 상기 이외의 관련 제 경비
		2101210	학생현장실습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교육비가 아닌 외부 학생 현장실습에 따른 실습비등 경비
		2101211	학생교육훈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교내외 전지훈련, 대회출전 대비 연습등에 소요되는 학생 제 교육 훈련비 연습, 훈련에 따른 학생 식비, 숙박비, 여비 등을 포함하여 계상
		2101212	학생대회출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대회 출전에 따른 등록비, 출전에 따른 여비, 재료비 등 제 경비 학생 여비만 지급하는 경우엔 310-01 목에 편성
		2101217	학생자치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급회 운영, 학급 환경미화, 학급운영 등 학급자치활동에 소요되는 학급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경비를 계상 소액에 한하며, 품목이 많지 않고 다량 구매를 통해 예산절감이 확연한 경우엔 자치활동비로 지급치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 원가비목에 계상 환경미화 등 학급, 활동부서 등 범위가 학급을 넘어서는 경우엔 포함하여 계상 학생회의 자치 능력 향상을 통해 실질적 자치활동을 지원 특별활동, 써클활동 모임에 대한 자치활동비 및 기타 학생자치조직 관련한 자치활동비
	210-13 위탁사업비			
		2101313	학생위탁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학원 위탁교육비 등 외부기관, 시설로 학교 교육을 일부 위탁한 경우 위탁교육비 민간참여 사업에 의해 학생 교육비를 민간참여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위탁교육비 장기에 걸쳐 학생 교육활동의 일부를 외부로 위탁하여 실시하는 위탁용역비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등에 따른 일시적 용역은 210-12목에 계상
		2101318	급식사업위탁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식운영을 외부 업체와 계약에 의해 위탁으로 실시하는 경우의 반대급부

목	세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 해설
		2101320	음식물처리위탁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식에 따른 잔반, 음식물 쓰레기 등을 외부 위탁하는 위탁용역
		2101344	기타학교업무위탁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장치 위탁용역비 (무인기계경비 등 별도 구분한 위탁용역비는 제외) 입목죽, 집기비품위탁용역비 교구·기자재위탁용역비 선박관리, 항공기관리 위탁용역비 운반 건설기계 포함한 차량관리 위탁용역비 유산자산, 소프트웨어, 기타자산 위탁용역비 고가 기자재 유지관리 위탁 용역을 별도 계약에 의해 실시하는 경우 위탁용역비 운반급식에 따른 운반 등의 업무를 계약에 의해 외부로 위탁하는 위탁용역비 수족관 관리, 사무기기 관리, 정수기 관리 위탁용역비 방화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대행에 따른 위탁용역비 방역소독, 조경관리, 학교청소, 쓰레기분리수거 위탁용역비 정보화기기,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비 기타 교육활동 및 학교업무에 대한 외부 위탁용역비 일시적 소규모 수선은 210-09목, 대규모 수선은 420-03목에 계상
		2101345	시설장비위탁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자치단체 업무의 외부위탁에 따른 제비용 별도 관리 계약에 의한 체육시설 관리 위탁 용역비 급식실, 조리실, 고층건물 등에 물건운반용 텀웨이터 관리 위탁용역비 전기시설 관리를 외부 위탁용역에 의해 실시하는 경우 소방시설 관리, 보일러관리, 승강기 관리 위탁용역비 화장실관리, 물탱크및 저수조관리, 오수정화조 관리 위탁용역비 일시적 소규모 수선은 210-09목, 대규모 수선은 420-03목에 계상
		2101346	유·무인경비위탁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 유인경비 위탁용역비 유인/무인 기계경비 위탁용역비
	210-14	민자사업운영비		
		2101401	BTL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BTL운영비
	210-15	기타일반수용비		
		2101501	기타일반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일반수용비
	220	여비		
		220-01	국내여비	

목	세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 해설
		2200101	공무원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및 조례에 의한 공무원 출장여비
		2200102	비공무원출장여비	◦ 공무원이 아닌 자의 출장여비
		2200103	이전여비	◦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220-02 국외여비			
		2200201	공무원국외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및 조례에 의한 공무원 해외 출장여비
		2200202	비공무원국외출장여비	◦ 공무원이 아닌자의 해외 출장 여비
	220-03 외빈초청여비			
		2200301	외빈초청여비	◦ 외빈초정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연회비, 선물비, 환송연 행사 등 기타 부대경비는 업무추진비에 계상
		220-04 국외훈련여비		
		2200401	국외훈련여비	◦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 항공료, 체재비, 학자금 등
		230 업무추진비		
	230-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300101	기관운영경비	◦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 ◦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2300103	교직원협의회경비	◦ 교직원 교과/평가/부별 협의회, 간담회 등에 따른 식비, 다과비 등 ◦ 교직원,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중복될 경우 사업목적, 비중을 판단 대표 비목에 편성
		2300104	학부모협의회경비	◦ 학부모, 학부모회, 지역주민 등 관련 협의회 간담회 등에 따른 식비, 다과비 등
		2300105	학교운영위원회경비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운영위원 간담회, 회의 시 식비, 다과비 등
		2300106	기관장회비	◦ 상급기관 예산편성지침, 집행지침에서 허용하는 경비에 한함
		2300107	기관장격려비	◦ 기관의 대표자격으로 지출하는 격려금, 격려금품 등 격려성 경비 ◦ 상급기관 예산편성지침, 집행지침에서 허용하는 경비에 한함 ◦ 공적업무 수행이 아닌 개인 자격의 격려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집행

목	세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 해설
		2300108	기관장경조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의 대표자격으로 지출하는 경조사비 성 경비 상급기관 예산편성지침, 집행지침에서 허용하는 경비에 한함 공적업무 수행이 아닌 개인 자격의 경조사비 등은 직책급업무추진비로 집행
		230-02	사업추진업무추진비	
		2300201	사업추진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각종시책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행사경비 - 해외출장지원경비, 대회출전 각종 격려금 등 피해학생 학부모 격려,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240	복리후생비	
		240-01	교직원복리후생비	
		2400101	교원학술연구지원비	교원 학술·연구모임 지원 경비
		2400102	동호회지원비	교직원 동호회 지원경비
		2400104	직원능력개발비	교직원 능력 개발비
		2400107	기타복리후생비	교직원 기타 복리후생비
		2400108	영유아보육수당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수당
		2400109	복식수업및순회교사수당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조의 규정에 의한 순회교사 및 복식수당 담당 교사
		240-02	맞춤형복지비	
		2400201	맞춤형복지비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250	직무수행경비	
		250-01	직급보조비	
		2500101	직급보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급보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직책 수행을 위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6에 의하여 직책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50-02	직책급업무추진비	
		2500201	직책급업무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목	세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 해설
	260 연구개발비			
	260-01 연구개발비			
		2600104	소프트웨어개발비	◦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감리비 포함)
300	이전지출			
	310 보전금			
	310-01 보상금			
		310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궐구 제작비 등
		3100102	장학금및학자금	◦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3100111	학생학비지원금	◦ 저소득층 자녀 등에게 지원하는 학생 수업료 등의 학비 지원금 ◦ 소속학교에 학비로 납부의무 조건이 있는 학비 지원금
		3100112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지원금	◦ 저소득층 자녀 등에게 지원하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지원금 ◦ 소속학교에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로 납부의무 조건이 있는 지원금
		3100113	수익자부담교육활동비지원금	◦ 현장체험학습비, 수련회비 등 수익자부담 교육활동비 지원금 ◦ 소속학교에 수익자부담 교육활동비로 납부의무 조건이 있는 지원금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급식비 등은 별도목이 있는 수익자부담 지원금은 제외
		3100114	급식비지원금	◦ 저소득층 자녀 등에게 지원하는 학생 급식비 지원금 ◦ 소속학교에 급식비로 납부의무 조건이 있는 급식비 지원금 ◦ 지원대상자에게 도시락, 식사직접제공 등 현품으로 지원하는 경우 현품 구입비 - 소모품으로 취급치 않고 금전적 지원이 아닌 현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3100115	기숙사비지원금	◦ 저소득층 자녀 등에게 지원하는 학생 기숙사비 지원금 ◦ 소속학교에 기숙사비로 납부의무 조건이 있는 기숙사비 지원금
		3100116	정보화비지원금	◦ 저소득층 자녀 등에게 지원하는 인터넷 통신비 등 정보화 관련 지원금 ◦ 지원대상자에게 컴퓨터 등을 현품으로 지원하는 경우 현품 자산 구입비 - 학교 자산으로 취급치 않고 현품 지원으로 소유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에 한함

목	세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 해설
		3100117	생활비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자녀 교통비 등 생활비 보조 성격의 지원금 - 학교에서 통학차량(선)을 적영할 경우만 납무의무 조건이 있는 지원금
		3100118	학생국내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에서 실비 보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 학생 국내여비
		3100119	학생국외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에서 실비 보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 학생 국외여비
		3100120	기타학생보조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이외의 수혜대상이 학생인 각종 지원금
		3100103	민간인포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장려금, 상금 및 보상금
		3100104	민간인부상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업관서에서 업무수행중 제반사고로 인한 민간인에 대한 부상 치료비
		3100105	민간행사급량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회의, 행사, 체전에 참가하는 학생, 학부모에게 급식하는 급량비(매식비 단가 적용) 및 교통비(실비)
		3100106	민간행사교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회의, 행사, 체전에 참가하는 학생,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교통 실비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에서 행사를 주관하여 지급하는 대규모 행사의 단체적 일괄적 실비 보상적 경비로 단순출장, 출전과 구분
		3100121	민간행사숙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회의, 행사, 체전에 참가하는 학생,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에서 행사를 주관하여 지급하는 대규모 행사의 단체적 일괄적 실비 보상적 경비로 단순출장, 출전과 구분
		3100107	민간행사사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단순 참가자는 지급 제외)
		3100108	민간외래강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외래 강사료
		3100109	민간외래강사실비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강사 초빙에 따른 교통비 및 숙박비
		3100110	공익근무요원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역법 제26조 내지 제33조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중식비, 교통비, 퇴복비 등
		3100122	원어민강사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어민 강사초빙에 따른 교통비 및 숙박비, 정착비 등 실비 보상적 경비 원어민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성 경비 및 강사료 등을 제외한 보상적 제 경비
	310-02 배상금			
		3100201	배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3100202	보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에 의하여 보전하여야 할 보상금(징발보상금)

목	세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 해설
		3100203	변상금	◦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310-03 포상금등	
		3100301	공무원포상금및상금	◦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의 원인 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금
		3100304	공로연수비	◦ 공로연수비 가. 공로연수로 파견된 공무원의 국내 또는 해외연수비 나.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의 배우자에 대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경비
		3100306	학생포상금	◦ 대회출전 입상에 따른 상금 등 학생에 대한 포상금
			320 민간이전	
			320-01 민간보조	
		3200103	학생치료비	◦ 학생치료비
			320-04 기타직법정부담금	
		3200401	기타직국민연금부담금	◦ 계약직교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3200402	기타직건강보험부담금	◦ 기타직 건강보험부담금
		3200403	기타직산업체해보험료	◦ 기타직 산업체해보험료
		3200404	기타직고용보험부담금	◦ 기타직 고용보험부담금
		3200405	기타직퇴직급여	◦ 기타직 퇴직급여
		3200406	기타직퇴직적립금	◦ 퇴직급여 충당을 위한 당해년도 기타직 퇴직적립금
		3200407	기타직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 기타직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320-05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3200501	기간제근로자국민연금부담금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목	세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 해설
		3200502	기간제근로자건강보험부담금	◦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부담금
		3200503	기간제근로자산업재해보헤험료	◦ 기간제근로자 산업재해보헤험료
		3200504	기간제근로자고용보험부담금	◦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부담금
		3200505	기간제근로자퇴직급여	◦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3200506	기간제근로자퇴직적립금	◦ 퇴직급여 충당을 위한 당해년도 기간제근로자 퇴직적립금
		3200507	기타직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 기타직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320-06 보험료부담금			
		3200601	보험료부담금	◦ 민간이 부담하는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보험료 지원비)
		3200602	학교안전공제회비	◦ 학교안전공제회비
400 자산취득				
	410 토지매입비			
	410-01 토지매입비			
		4100101	토지매입비	◦ 학교,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토지 매입비 ◦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
	420 건설비			
	420-01 기본조사설계비			
		4200102	기본설계비	◦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 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420-02 실시설계비			
		4200204	기타설시설계비	◦ 기타 실시설계비
		4200205	시설물설시설계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가.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조사 설계 완료 후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시설계에 착수 나. 실시설계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안됨

목	세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해야함 ◦ 구축물 실시설계비
	420-03 시설비			
		4200301	건물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건축물 시설비 (규모수선유지비 포함)
		4200302	토목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토목 시설비
		4200303	전기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전기 시설비
		4200304	정보·통신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정보·통신 시설비
		4200305	소방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소방 시설비
		4200306	기계설비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계설비 시설비
		4200307	위생설비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위생설비 시설비
		4200308	구축물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구축물 시설비
		4200309	조경공사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조경공사 시설비
		4200310	선박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선박 시설비
		4200311	항공기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항공기 시설비
		4200312	도장공사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도장공사 시설비
		4200313	부지정지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부지정지 시설비
		4200315	자산철거비	◦ 노후건물 철거 등 자산철거비
		4200314	기타자산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타자산 시설비
	420-04 감리비			
		4200401	감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 감독 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 기존자산의 가치 증대 및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지출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
	420-05 시설부대비			

목	세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 해설
		4200501	시설부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부대비용 ◦ 시설, 대수선, 재산취득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사시공 계획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나.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 수수료 다. 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퇴복비(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라.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의 수용비 및 수수료 마. 공사
430 유형자산				
430-01 취득비				
		4300101	건물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건물 취득비
		4300102	구축물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구축물 취득비
		4300103	기계장치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계장치 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 기계요소, 공작기계, 산업기계 취득비 - 교구용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 기계요소, 공작기계, 산업기계 취득비 - 전문계열 고등학교의 실습 기자재용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 기계요소, 공작기계, 산업기계 취득비
		4300104	입목죽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입목죽 취득비
		4300105	선박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선박 취득비
		4300106	항공기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항공기 취득비
		4300141	기기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기 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기기, 복사기 등 행정사무기기 취득비 - 의료 및 화학분석기기, 물리시험측정기기, 기타잡기기 취득비 - 교구용전기통신기기, 교구용기기, 의료및화학분석기기, 물리시험측정기기, 기타 잡기기 취득비 - 전문계열 고등학교의 실습 기자재용 전기통신기기 취득비 - 전문계열 고등학교의 실습 기자재용 기기 취득비 사무용 기기와 같은 종류의 물품 자산으로 전문계고 기재재로 분류되는 집기 - 전문계열 고등학교의 실습 기자재용 의료 및 화학분석 기기, 물리시험 측정기기, 기타 잡기기 취득비
		4300142	집기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집기 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용 책상, 의자 등 사무용 집기 취득비 - 교구용집기 취득비 - 전문계열 고등학교의 실습 기자재용 집기 취득비 사무용 집기와 같은 종류의 물품 자산으로 전문계고 기재재로 분류되는 집기

목	세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 해설	
		4300143	실험장비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변동을 가져오는 실험장비 취득비 - 기타실험장비, 고구용기타실험장비 취득비 - 전문계열 고등학교의 실습 기자재용 기타실험장비취득비 	
		4300133	도서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도서관 및 도서실, 기록관 등의 자본 형성적 도서 구입비 	
		4300135	기타유형자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항목에 나열되지 않은 자산취득비 	
440 무형자산					
440-01 무형자산					
		4400101	특허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권 취득비 	
		4400102	저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취득비 	
		4400103	소프트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취득비 	
		4400104	교육컨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컨텐츠 취득비 	
		4400105	실용-신안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용-신안권 취득비 	
		4400106	의장(디자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디자인)권 취득비 	
		4400107	상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권 취득비 	
		4400108	상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권 취득비 	
		4400109	기타무형자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무형자산 취득비 	
450 용자금					
450-04 기타민간용자금					
		4500404	단기임차보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미만에 회수할 임차 보증금 	
		4500405	장기임차보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후에 회수할 임차 보증금 	
460 기금적립					
460-02 기타기금					
		4600201	기타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기금으로 적립 	
		4600202	시설사업적립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사업 적립금 예) 10년뒤 기숙사 보수나 재건축 등을 위해 매년 적립하는 시설 적립금 	
		4600203	상각자산충당적립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의 물품, 기자재의 감가상각을 감안하여 향후 장비 교체를 위한 적립금 	
		4600204	목적사업적립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사업 적립금 예) 개교 100주년 행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하는 목적사업 적립금 	
500 상환지출					
510 상환지출					
510-03 민자사업지급금					

목	세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 해설
		5100301	BTL원금	◦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원금보상
		5100302	BTL이자	◦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원금에 대한 이자
600 전출금 등				
	610-0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6100301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자금
640 학교회계간 전출금				
	640-02 타학교회계로 전출금			
		6400201	타학교회계로전출금	◦ 다른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학교회계 자금 ◦ 운반급식 등에 따라 다른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학교회계 자금
700 예비비 및 기타				
	710 예비비 및 기타			
	710-01 예비비			
		7100101	예비비	◦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
	710-02 반환금 및 기타			
		7100201	국고보조금반환	◦ 교육청이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7100202	광역자치단체보조금반환	◦ 광역자치단체보조금반환
		7100203	기초자치단체보조금반환	◦ 기초자치단체보조금반환
		7100204	교특목적사업비반환금	◦ 교부 당시 사용잔액의 반납을 조건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출(보조)한 사업비의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학교회계 결산 이후 최초 추경에 편성하여 반납 ◦ 결산 보고시 추경으로 편성 반납해야할 금액임을 명시
		7100205	기타반환금	◦ 기타 반환금

제 5 장



각 종 서식

학교회계 예산서 각종서식

1. [서식1] 예산총칙	99
2. [서식2] 세입 세출 예산 총괄	100
3. [서식3] 부서사업별 예산 총괄	101
4. [서식4] 부서사업설명서	102
5. [서식5] 세부사업설명서	104
6. [서식6] 세입사업설명서	106
7. [서식7] 정책사업설명서	108
8. [서식8] 단위사업설명서	110
9. [서식9] 세입 장 설명서	112
10. [서식10] 세입 관 설명서	112
11. [서식11] 세입 항 설명서	113
12. [서식12] 세입 목 설명서	113
13. [서식13] 세입예산 명세서	114
14. [서식14] 세출예산 명세서	114
15. [서식15] 세입예산 조서	115
16. [서식16] 부서별 세출예산 조서	115
17. [서식17] 사업별 세출예산 조서	115
18. [서식18] 성질별 세출예산 조서	116
19. [서식19] 계속비 사업예산 조서	116
20. [서식20] 명시이월 사업예산 조서	116
21. [서식21] 의존재원별 세입예산 현황	117
22. [서식22] 정산재원별 세입예산 현황	117
23. [서식23] 사업별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118
24. [서식24] 사업별 물건비 세출예산현황	118
25. [서식25] 교육목표별 세출예산현황	119
26. [서식26] 부서사업별 세입세출예산현황	119

[서식 1]

○ ○ 학교회계 세입 · 세출 예산서

예산 총칙

예산구분 :

예산확정일		예산액	

[서식 2]

세입 세출 예산 총괄

회계연도 :

예산구분 : 본예산

학 교 명 :

예산구분	전년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본예산	최종예산		본예산	증감률	최종예산	증감률

세입				세출			
장	관	예산액	구성비	정책사업	단위사업	예산액	구성비

[서식 3]

부서사업별 예산 총괄

회계연도 :

예산구분 : 본예산

학 교 명 :

부서	세부 사업수	세출						세입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율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율
합 계													

[서식 4]

부서사업설명서

부서명	
-----	--

부서장		세출예산액(구성비)	(%)
-----	--	------------	-------

사업개요

--

사업목표 (*자료가 있을 경우만 출력)

세부사업	사업목표	주기	단위	2009			2010			2011
				목표	실적	달성을률	목표	실적	달성을률	목표

예산현황

1. 예산 총괄

세출						세입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율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율

2. 세부사업 현황

담당자	세부사업	세출			세입		
		전년예산액	예산액	증감	전년예산액	예산액	증감
합 계							

3. 세출 사업현황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율

4. 세입재원 현황

구분	계	목적 사업비	수익자 부담	법인/타학교 전입금	보조금 및 지원금	발전기금 전입금	일반
전년도 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5. 성질별 예산현황

구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	예비비 및 기타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6. 물건비 예산현황

구분	계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복리 후생비	직무 수행비	연구 개발비	비고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 각종 통계 및 참고자료

1. 교육목표별 예산현황

교육목표	세부사업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율

[서식 5]

세부사업설명서

세부사업명	
-------	--

정책사업		단위사업		부서	
교육목표					
사업기간		담당자		☎	

사업개요

--

사업목표 (*자료가 있을 경우만 출력)

사업목표	주기	단위	2009			2010			2011		비고
			목표	실적	달성을	목표	실적	달성을	목표	목표	

예산현황

1. 예산 현황

세부항목	세출						세입					
	전년 예산액	세출					전년 예산액	세입			구성비	비교 증감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율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2. 세출 각목명세서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산출내역	전년도예산액	산출식	예산액	비교증감
합계						

3. 세입 각목명 세서

목	원가통계비목	산출내역	전년도예산액	산출식	예산액	비교증감
합 계						

4. 세입재원 현황

구분	계	목적사업비	수익자부담	법인/타학교 전입금	보조금 및 지원금	발전기금	일반
전년도 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5. 성질별 예산현황

구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	예비비 및 기타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6. 물건비 예산현황

구분	계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복리 후생비	직무 수행비	연구 개발비	비고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서식 6]

세입사업설명서

사업명	세입사업관리
-----	--------

부서	행정실	정산재원	(%)
담당자	☏	일반재원	(%)

사업개요

사업목표 (*자료가 있을 경우만 출력)

사업목표	주기	단위	2009			2010			2011	비고
			목표	실적	달성을	목표	실적	달성을	목표	

예산현황

1. 예산 현황

세입과목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율
장	관						
합계							

2. 부담 주체별 재원현황

의존재원명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율
정부재원	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					
	지방보조금					
학부모재원	기본적교육수입					
	선택적교육수입					
기타민간재원	법인/타학교전입금					
	발전기금전입금					
	잡수입등 기타					
합 계						

3. 목적지정 재원현황

정산재원명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율
목적사업비						
수익자부담						
보조금 및 지원금						
발전기금						
법인/타학교전입금						
일반재원						
합 계						

4. 정책사업별 재원투자 현황

정책사업	계	목적사업비	수익자 부담	법인/타학교 전입금	보조금 및 지원금	발전기금	일반
인적자원운용							
학생복지/ 교육격차 해소							
기본적 교육활동							
선택적 교육활동							
교육활동 지원							
학교 일반운영							
학교 재무활동							
합 계							

[서식 7]

정책사업설명서

정책사업명	
-------	--

학교명		세출예산액(구성비)	(%)
-----	--	------------	-------

예산현황

1. 예산 현황

단위사업	세출						세입재원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율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율
합 계												

2. 세입재원 현황

구분	계	정산재원					일반재원
		목적사업비	수익자 부담	법인/타학교 전입금	보조금 및 지원금	발전기금	
전년도 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3. 성질별 예산현황

구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	예비비 및 기타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4. 물건비 예산현황

구분	계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복리 후생비	직무 수행비	연구 개발비	비고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 각종 통계 및 참고자료

1. 교육목표별 예산현황 (*자료가 있을 경우만 출력)

교육목표	세부사업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율

[서식 8]

단위사업설명서

단위사업명	
-------	--

학교명		세출예산액(구성비)	(%)
-----	--	------------	-------

□ 예산현황

1. 예산 현황

단위사업	세출						세입재원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율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율
합 계												

2. 세입재원 현황

구분	계	정산재원					일반재원
		목적사업비	수익자 부담	법인/타학교 전입금	보조금 및 지원금	발전기금	
전년도 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3. 성질별 예산현황

구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	예비비 및 기타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4. 물건비 예산현황

구분	계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복리 후생비	직무 수행비	연구 개발비	비고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 각종 통계 및 참고자료

1. 교육목표별 예산현황 (*자료가 있을 경우만 출력)

교육목표	세부사업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율

[서식 9]

세입장설명서

세입-장	
------	--

학교명		세입예산액(구성비)		(%)
-----	--	------------	--	-------

□ 예산현황

1. 예산 현황

세입-관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율
합 계						

[서식 10]

세입관설명서

세입-관	
------	--

세입-장		세입예산액(구성비)		(%)
------	--	------------	--	-------

□ 예산현황

1. 예산 현황

세입-항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율
합 계						

[서식 11]

세입항설명서

세입-항	
------	--

세입-관	세입예산액(구성비)	(%)
------	------------	-------

□ 예산현황

1. 예산 현황

세입-목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율
합 계						

[서식 12]

세입목설명서

세입-목	
------	--

세입-항	세입예산액(구성비)	(%)
------	------------	-------

□ 예산현황

1. 각목명세서

원가통계비목	산출내역	전년도예산액	산출식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서식 13]

세입예산 명세서

예산구분 :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세입 합계									

[서식 14]

세출예산 명세서

예산구분 :

(단위 : 천원)

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정책	단위	세부	세부 항목	원가통계비목					
세출 합계									

[서식 15]

세입 예산 조서

회계연도 :

예산구분 :

학 교 명 :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록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율
합 계										

[서식 16]

부서별 세출 예산 조서

회계연도 :

예산구분 :

학 교 명 :

부서	세부사업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율
합 계							

[서식 17]

사업별 세출 예산 조서

회계연도 :

예산구분 :

학 교 명 :

정책사업	단위사업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율
합 계							

[서식 18]

성질별 세출 예산 조서

회계연도 :

예산구분 :

학 교 명 :

목그룹	목	세목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율
합 계								

[서식 19]

계속비 사업 예산조서

회계연도 :

예산구분 :

학 교 명 :

세부사업 :

사업기간 : ~

구분	총사업비	2009 (Y-1)	2010 (당해년도)	2011 (Y+1)	2012 (Y+2)	2013 (Y+3)
당초						
변경						
증감						

[서식 20]

명시이월 사업 예산조서

회계연도 :

예산구분 :

학 교 명 :

세부사업	세부항목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지출잔액	다음 연도 이월액
당초						
변경						
증감						

[서식 21]

의존 재원별 세입예산 현황

회계연도 :

예산구분 :

학 교 명 :

의존재원명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율
정부재원	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					
	지방보조금					
학부모재원	기본적교육수입					
	선택적교육수입					
기타민간재원	법인/타학교전입금					
	발전기금전입금					
	잡수입등 기타					
합 계						

[서식 22]

정산 재원별 세입예산 현황

회계연도 :

예산구분 :

학 교 명 :

정산재원명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율
목적사업비						
수익자부담						
보조금 및 지원금						
발전기금						
법인/타학교전입금						
일반재원						
합 계						

[서식 23]

사업별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회계연도 :

예산구분 :

학 교 명 :

세부사업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 지출	전출금	예비비 및 기타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서식 24]

사업별 물건비 세출예산 현황

회계연도 :

예산구분 :

학 교 명 :

세부사업	계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복리 후생비	직무 수행비	연구 개발비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서식 25]

교육목표별 세출예산 현황

회계연도 :

예산구분 :

학 교 명 :

교육목표	세부사업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율

[서식 26]

부서 사업별 세입·세출예산 현황

회계연도 :

예산구분 :

학 교 명 :

학회계 결산서 각종서식

1. [서식27]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123
2. [서식28] 부서사업별 결산 총괄표	124
3. [서식29] 부서사업설명서	125
4. [서식30] 세부사업설명서	127
5. [서식31] 세입사업설명서	129
6. [서식32] 정책사업설명서	131
7. [서식33] 단위사업설명서	133
8. [서식34] 세입 장 설명서	135
9. [서식35] 세입 관 설명서	135
10. [서식36] 세입 항 설명서	136
11. [서식37] 세입 목 설명서	136
12. [서식38] 세입결산 명세서	137
13. [서식39] 세출결산 명세서	137
14. [서식40] 과목별 세입결산 조서	137
15. [서식41] 사업별 세입결산 조서	138
16. [서식42] 부서별 세출결산 조서	138
17. [서식43] 사업별 세출결산 조서	138
18. [서식44] 성질별 세출결산 조서	138
19. [서식45] 예비비사용명세서	139
20. [서식46] 세출예산이(전)용명세서	139
21. [서식47] 계속비조서	140
22. [서식48] 명시이월비명세서	140
23. [서식49] 사고이월비명세서	141
24. [서식50] 계속비이월명세서	141
25. [서식51] 불용 사유별 현황	142
26. [서식52] 목적사업비 집행현황	142
27. [서식53] 보조금및지원금 집행현황	142
28. [서식54] 발전기금전입금 집행현황	142
29. [서식55] 수익자부담금 집행현황	143
30. [서식56] 전년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	143
31. [서식57] 전년사고이월사업비 집행현황	143
32. [서식58] 사업별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	144
33. [서식59] 사업별 물건비 세출결산 현황	144
34. [서식60] 교육목표별 세출결산 현황	144

[서식 27]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비고

□ 잉여금 처리상황

(단위 : 천원)

세계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 반환확정액	순세계 잉여금		
세입 결산	세출 결산	차액	명시	사고	계속비	소계		결산전 이입	결산후 이월	소계

□ 세입·세출 결산내역

세입				세출			
장	관	결산액	구성비	정책사업	결산액	구성비	

[서식 28]

부서 사업별 결산 총괄표

회계연도 :

학 교 명 :

부서	세부 사업수	세출				세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합 계									

[서식 29]

부서사업설명서

부서명	
-----	--

부서장		세출결산액(구성비)	(%)
-----	--	------------	-------

사업개요

--

사업목표 (*자료가 있을 경우만 출력)

세부사업	사업목표	주기	단위	2009			2010			2011
				목표	실적	달성을률	목표	실적	달성을률	목표

결산현황

1. 결산 총괄

세출						세입					
예산 현액	구성비	결산액	구성비	잔액	증감율	예산 현액	구성비	결산액	구성비	잔액	증감율

2. 세부사업 현황

담당자	세부사업	세출				세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3. 세출 사업 현황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현액	구성비	지출액	구성비	다음 연도 이월액	구성비	불용액	증감율

4. 세입재원 현황

구분	계	정산재원					일반재원
		목적사업비	수익자 부담	법인/타학교 전입금	보조금 및 지원금	발전기금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5.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

구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	예비비 및 기타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6. 물건비 세출결산 현황

구분	계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복리 후생비	직무 수행비	연구 개발비	비고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 각종 통계 및 참고자료

1. 교육목표별 세출결산 현황 (*자료가 있을 경우만 출력)

교육목표	세부사업	예산현액	구성비	지출액	구성비	이월액	구성비	불용액	구성비

[서식 30]

세부사업설명서

세부사업명	
-------	--

정책사업		단위사업		부서	
교육목표					
사업기간		담당자		☎	

사업개요

사업목표 (*자료가 있을 경우만 출력)

사업목표	주기	단위	2009			2010			2011	비고
			목표	실적	달성을	목표	실적	달성을	목표	

결산현황

1. 결산 현황

세부항목	세출				세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2. 세출 각목명세서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산출내역	예산액	이월등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3. 세입 각목명 세서

목	원가통계비목	산출내역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4. 세입재원 현황

구분	계	정산재원					일반재원
		목적사업비	수익자부담	법인/타학교전입금	보조금 및 지원금	발전기금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5.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

구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	예비비 및 기타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6. 물건비 세출결산 현황

구분	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비	연구개발비	비고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서식 31]

세입사업설명서

사업명	세입사업관리
-----	--------

부서	행정실	정산재원 결산액	(%)
담당자	◎	일반재원 결산액	(%)

사업개요

--

사업목표 (*자료가 있을 경우만 출력)

사업목표	주기	단위	2009			2010			2011			비고
			목표	실적	달성을	목표	실적	달성을	목표			

결산현황

1. 결산 현황

세입과목		예산현액	구성비	정수 결정액	구성비	수납액	증감율	불납 결손액	증감율	미수납액	증감율
장	관										
합 계											

2. 부담 주체별 결산현황

의존재원명	예산현액	구성비	정수 결정액	구성비	수납액	증감율	불납 결손액	증감율	미수 납액	증감율
정부재원	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									
	지방보조금									
학부모 재원	기본적교육수입									
	선택적교육수입									
기타민간 재원	법인/타학교전입금									
	발전기금전입금									
	잡수입등 기타									
합 계										

3. 재원별 결산현황

정산재원명	예산현액	구성비	정수 결정액	구성비	수납액	증감율	불납 결손액	증감율	미수납액	증감율
목적사업비										
수익자부담										
보조금 및 지원금										
발전기금										
법인/타학교전입금										
일반재원										
합 계										

4. 정책사업별 재원투자 현황

정책사업	계	정산재원					일반재원
		목적 사업비	수익자 부담	법인/타학교 전입금	보조금 및 지원금	발전기금	
인적자원운용							
학생복지 /교육격차 해소							
기본적 교육활동							
선택적 교육활동							
교육활동 지원							
학교 일반운영							
학교 재무활동							
합 계							

[서식 32]

정책사업설명서

정책사업명

학교명	세출결산액(구성비)	(%)
-----	------------	-------

□ 결산현황

1. 결산 현황

단위사업	세출				세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합 계								

2. 세입재원 현황

구분	계	정산재원					일반재원
		목적사업비	수익자부담	법인/타학교전입금	보조금및지원금	발전기금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3.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

구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	예비비 및 기타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4. 물건비 세출결산 현황

구분	계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복리 후생비	직무 수행비	연구 개발비	비고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 각종 통계 및 참고자료

1. 교육목표별 결산현황 (*자료가 있을 경우만 출력)

교육목표	세부사업	예산현액	구성비	지출액	구성비	이월액	구성비	불용액	구성비

[서식 33]

단위사업설명서

단위사업명	
-------	--

정책사업명		세출결산액(구성비)		(%)
-------	--	------------	--	-------

결산현황

1. 결산 현황

세부사업	세출				세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2. 세입재원 현황

구분	계	정산재원					일반재원
		목적 사업비	수익자 부담	법인/타학교 전입금	보조금 및 지원금	발전기금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3.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

구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	예비비 및 기타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4. 물건비 세출결산 현황

구분	계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복리 후생비	직무 수행비	연구 개발비	비고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 각종 통계 및 참고자료

1. 교육목표별 결산현황 (*자료가 있을 경우만 출력)

교육목표	세부사업	예산현액	구성비	지출액	구성비	이월액	구성비	불용액	구성비

[서식 34]

세입장설명서

세입-장	
------	--

학교명		세입결산액(구성비)	(%)
-----	--	------------	-------

결산현황

1. 결산 현황

세입-관	예산현액	구성비	징수결정액	구성비	수납액	증감율	불납 결손액	증감율	미수납액	증감율
합 계										

[서식 35]

세입관설명서

세입-관	
------	--

세입-장		세입결산액(구성비)	(%)
------	--	------------	-------

결산현황

1. 결산 현황

세입-항	예산현액	구성비	징수결정액	구성비	수납액	증감율	불납 결손액	증감율	미수납액	증감율
합 계										

[서식 36]

세입항설명서

세입-항	
------	--

세입-관		세입예산액(구성비)		(%)
------	--	------------	--	-------

결산현황

1. 결산 현황

세입-목	예산현액	구성비	정수결정액	구성비	수납액	증감율	불납 결손액	증감율	미수납액	증감율
합 계										

[서식 37]

세입목설명서

세입-목	
------	--

세입-항		세입예산액(구성비)		(%)
------	--	------------	--	-------

결산현황

1. 각목명세서

원가통계비목	예산현액	구성비	정수결정액	구성비	수납액	증감율	불납 결손액	증감율	미수납액	증감율
합 계										

[서식 38]

세입결산 명세서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산출기초(원)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세입합계									

[서식 39]

세출결산 명세서

(단위 : 원)

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산출기초(원)	비고
정책	단위	세부	세부	원가통계비목					
세출합계									

[서식 40]

과목별 세입결산 조서

장	관	항	목	예산액	이월등 증감액	예산현액	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서식 41]

사업별 세입결산 조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이월등 증감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서식 42]

부서별 세출결산 조서

부서	세부사업	예산액	이월등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서식 43]

사업별 세출결산 조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예산액	이월등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서식 44]

성질별 세출결산 조서

목그룹	목	세목	예산액	이월등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서식 45]

예비비사용명세서

(단위 : 원)

과 목					총사업비 (예산현액)	예비비 지 출 결정액	예비비 사용액	예비비 사용 잔액	지출 결정일	예비비 사용내역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항목	원가목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46]

세출예산이(전)용명세서

(단위 : 원)

과 목					이(전)용액		이(전)용사유
정책	단위	세부	항목	원가목	증	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47]

계 속 비 조 서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 분	총 액	전전회계연도이전			전회계연도			당 해 회계연도	○○ 회계연도	○○ 회계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당초											
	수정										
	계										

(주) 전회계연도란까지는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잔액을 기입하고 당해 회계연도란부터는 계획액만을 기입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48]

명 시 이 월 비 명 세 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지출잔액 ③	이월액 ④	불용액 ①-②-④	사 유
정 책	단 위	세 부	항 목	월 가 목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49]

사 고 이 월 비 명 세 서

(단위: 천원)

과 목					예산 현액①	지출원인 행위액②	지출액 ③	지출잔액 (④=②- ③)	이월액 ⑤	불용액 ①-③- ⑤	사유
정책	단위	세부	항 목	원 가 목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50]

계 속 비 이 월 명 세 서

(단위 : 천원)

과 목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 현액 ①	지출액 ②	이월액 ③	불용액 ①-②- ③	사유
정책	단위	세부	항 목	원 가 목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51]

불용 사유별 현황

회계연도 :

학 교 명 :

(단위 : 원)

세부 사업	예산 현액 (A)	불용액 (B)	사유별 미수납액					불용 비율 (B/A)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 절감	지급사유 미 발생	집행 잔액	기타	

[서식 52]

목적사업비 집행현황

회계연도 :

학 교 명 :

(단위 : 원)

보조사업명	교부총액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반납(예정)액

[서식 53]

보조금 및 지원금 집행현황

회계연도 :

학 교 명 :

(단위 : 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반납(예정)액

[서식 54]

발전기금전입금 집행현황

회계연도 :

학 교 명 :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반납(예정)액

[서식 55]

수익자부담금 집행현황

회계연도 :

학 교 명 :

세입원가비목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반납(예정)액

[서식 56]

전년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

회계연도 :

학 교 명 :

세부사업	예산현액	전년 이월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비고

[서식 57]

전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현황

회계연도 :

학 교 명 :

세부사업	예산현액	전년 이월액	지출액	불용액	비고

[서식 58]

사업별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

회계연도 :

학 교 명 :

세부사업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	예비비 및 기타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								
불용액								

[서식 59]

사업별 물건비 세출결산 현황

회계연도 :

학 교 명 :

세부사업	계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복리 후생비	직무 수행비	연구 개발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							
불용액							

[서식 60]

교육목표별 세출결산 현황

회계연도 :

학 교 명 :

교육목표	세부사업	예산현액	구성비	지출액	구성비	이월액	구성비	불용액	구성비

기타 각종서식

1. [서식61] 학교현황 147
2. [서식62] 학교회계직원 개인별 명단 148
3. [서식63] 20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퇴직금 적립현황 149
4. [서식64] 2010학년도 학교회계직원 퇴직금 적립현황 149
5. [서식65] 예산요구서 150
6. [서식66] 학교운영지원비 감면통지서 152
7. [서식67] 학교운영지원비 감면자 명부 153
8. [서식68] 퇴직금 관리대장 154
9. [서식69] 학교회계 분기별 예산집행현황 155

[서식 61]

학 교 현 황

1. 학급 및 학생수 현황 (3.1현재)

학년별 학교별	1		2		3		..		계		비 고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	학급수	학생수		
							..				

※ 결산서 제출시는 당해연도 2.28일 현재로 작성, 이하 모두 동일

2. 교직원 현황 (3.1현재)

구분	교 원						학 교 회 계 직 원												합 계		
	교 장	교 감	보 직 교 사	교 강 사	계	일 반 직	기 능 직	계	영 양 사	사 서	순 회 코 치	사 무 보 조 원	유 치 원 종 일 반 보 조 자	평 생 교 육 사	교 무 보 조 원	과 학 실 협 보 조 원	특 수 교 육 보 조 원	전 산 보 조 원	전 일 학 교 제 운 영 보 조 교 사	조 리 종 사 원	유 치 원 연 장 제 학 급 보 조 자
정원																					
현원																					

3. 퇴직 예정 교직원 현황

구 분	교원	일반직	기타(학교회계직원)	합계
인원수				
퇴직예정 연월일				

※ 예산서 제출시에만 작성 (대상기간 : 2011.3.1~2012.2.28)

[서식 62]

학교회계직원 개인별 명단

(단위 : 천원, 3.1현재)

성명	최초임용일자 (퇴직금 산정기준일자)	월 임금 지급내역					총 퇴직 금액	담당 업무	인건비 지급 기준			
		월정임금(1)			비월정 임금(2)	계 (1)+(2)						
		기본급 (보수월액)	수당	계								
	1995.6.8 (2001.3.1)								기능10 (9)			
계	명											

※ 인건비 지급기준란에는 학교회계직원 연봉등급을 표시.

단, 호봉제 직원은 기능10, 고용으로 표시하며, ()안에 지급호봉표시

※ 최초임용일자(퇴직금산정기준일자) : 최초임용일자는 그동안에 이루어진 재계약과 상관없이 최초로 당해 기관에서 임명한 날짜를 말하며, 퇴직금산정기준일자는 중간에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이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한 날짜를 말함

- 위의 예에서는 '95. 6. 8일 최초 임용하였으며, '01.2.28일까지의 퇴직금이 중간정산 되었고, 현재도 재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학교회계직원

- 기본급 : 보수월액을 말하며, 월정임금 수당은 해당없음
- 비월정임금 : 특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수당 등
- 담당업무 : 영양사, 과학실험, 전산보조 등 기재

※ 연봉제 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기존의 학교회계직원

- 월정임금의 수당 : 당해 학년도 12월분 직급보조비, 급량비, 교통비, 시간외수당 정액분, 정근수당가산금, 관리수당 등의 합
- 비월정임금 :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봉급조정수당(25%),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연가보상비의 연액(추계)을 12로 나눈 금액
- 총퇴직금액 : 당해 학년도 2월말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에서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기납부액을 공제한 금액
- 담당업무 : 사무보조원, 교무보조원 등 기재

[서식 63]

20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퇴직금 적립현황(예산서식)

(단위 : 원)

구분 성명	기적립현황 (2011.2월말까지) (확정액) (A)	2011학년도 퇴직금 적립 (예산액) (B)	퇴직금 지급 예정액 (C)	적립금 이월예정액 (2012년도로 이월할 예정액) (A+B-C)	담당업무
계					

[서식 64]

2010학년도 학교회계직원 퇴직금 적립현황(결산서식)

(단위 : 원)

구분 성명	기적립현황 (2010.2월말 까지) (A)	2010학년도 퇴직금 결산 (적립)액 (B)	퇴직금지급액 (C)	적립금 이월액 (2011년도로) (A+B-C)	담당업무
계					

[서식 65]

예 산 요 구 서 (예시)

A. 개인별 예산요구서 서식

세부사업명		특별보충과정 운영			
정책사업	교수-학습활동	단위사업	교과활동	부서	연구부
교육목표	전인교육				
사업기간	2011.03.01.~ 2012.02.28.	담당자	홍 길 동	☎ 000-0000	교)000

□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및 근거
가. 목적
○ 수준별 교육과정 수업에 당해 단계의 학습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특별보충 과정 실시로 학생의 학습능력 신장 및 기회균등 제공
나. 근거
○ 2011학년도 인천○○○학교 교육과정운영 계획
2. 사업 개요
가. 관련교과
○ 영어, 수학
나. 특별보충과정 선정기준
○ 부진아 판별평가 성취도 40% 미만인 자
○ 정기고사 과목 성취도 40% 미만인 자
○ 특별보충과정 이수 희망학생
○ 담당교사가 이수를 추천하는 학생

□ 사업목표

순	사업목표	주기	단위	당해년도			전년도			차년도	비고
				목표	실적	달성을	목표	실적	달성을		
1	부진아 구제 (학습목표 도달도)	분기	명	20	-	-				90	

□ 예산현황

1. 예산 현황

세부항목	세출						전년 예산액	구성비	세입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율
	전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율			예산액	계	정산	일반		

2. 세출 각목명 세서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산출내역	전년도예산액	산출식	예산액	비교증감
합 계						

3. 세입 각목명 세서

목	원가통계비목	산출내역	전년도예산액	산출식	예산액	비교증감
합 계						

4. 세입재원 현황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에 반영한 세입 재원명 세부항목별로 자동 산출)

구분	계	목적사업비	수익자 부담	법인/타학 교전입금	보조금 및 지원금	발전기금	일반
전년도 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5. 성질별 예산현황

구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	예비비 및 기타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6. 물건비 예산현황

구분	계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복리 후생비	직무 수행비	연구 개발비	비고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 각종 통계 및 참고자료

1. 교과별 예산현황

교과분류	예산액	비고
기타교과	10,500,000	

2. 참고자료 : 2011학년도 학습부진아 지도계획 1부.

학교운영지원비 감면통지서

학년 반 번
학생명
(보호자)

귀 자녀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 감면 신청서류를 검토한바,
본교 학교운영지원비 감면 대상에 해당되어 2011학년도 학교
운영지원비를(전액,반액)을 면제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하여
드립니다.

2011. . .

○○○○○ 학교장

귀 하

[서식 67]

학교운영지원비 감면자 명부

200○학년도 ○기분

[서식 68]

퇴직금 관리대장

[서식 69]

학교회계 분기별 예산집행현황(예시)

학교명 :

[1/4]분기

(단위 : 천원)

정책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세 출			비고
			예산현액(+)	원인행위(+)	예산잔액	
인적자원 운용	교원연수					
합 계						

※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음

주요 변동내역



○ 주요 변동내역

구 분	페이지	2011년도	2010년도	사 유
II. 적용대상	5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자율학교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교직원보수(교원연구비 제수당) 및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사항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자율학교는 학교회계 예산 편성지침이 기급적 최소로 적용받도록 운영 추진(구체 내용·최소화)
III. 학교회계 운용 일반 사항	6	1. 학교회계의 설치단위 마. 각종학교는 학교회계제도를 준용하여 운영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여 관할청에 보고한다.	1. 학교회계의 설치단위 마. 단설유치원과 각종학교는 학교회계제도를 준용하여 운영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여 관할청에 보고한다.	2010년 공립단설유치원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 지원과-969, 10.2.2호와 관련
V.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기준	12~28	3. 세입 예산 (내용 별첨) 4. 세출 예산 (내용 별첨)	3. 세입 예산 (내용 별첨) 4. 세출 예산 (내용 별첨)	2011학년도 학교회계 정책, 단위사업 구분 등 변경에 따라 세입·세출 내용 전면 변경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 재정과-3799, 10.11.1호와 관련
V.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기준 3. 세입 예산	14	나. 자체수입 (1) 학교운영지원비 (마)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확대 ○ 연차별 지원 계획 ▶ 2011년 : 1학년 및 읍면지역 지원 ▶ 2012년 : 1~2학년 및 읍면지역 지원 ▶ 2013년 이후 : 전체 중학생 지원 ※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하여 교부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별도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사업은 연차별 폐지(2011년 중학교 저소득층자녀 학비는 2~3학년에 대해 서면 교육청에서 지원)	<신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확대

구 분	페이지	2011년도	2010년도	사 유
V.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기준 4. 세출 예산	19	<p>다. 예산편성 내역 및 기준</p> <p>1) 인적자원운용</p> <p>나)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의 교수 및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 사업비 - <u>자율연수(교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특수분야연수기관의 직무연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원격직무연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자기능력개발계획에 따른 교원자율직무연수(학교단위 및 개인자율연수) 경비 지원(정원 내 기간제교원 포함) 	<p>다. 예산편성 내역 및 기준</p> <p>1) 인적자원운용</p> <p>나)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의 교수 및 업무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 사업비 <p><신설></p>	<p>단위학교 이관 및 통합배분 사업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자율연수 활성화로 교원 전문성 신장 및 역량강화 -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 기획과-11670, 10.10.2호와 관련 ○ 교원자율연수비 학교회계 자체편성 운영(2011년부터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지원) ○ 2011. 학교회계 정책, 단위사업 구분 변경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 재정과-3799, 10.11.1호와 관련
V.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기준 4. 세출 예산	19	<p>다. 예산편성 내역 및 기준</p> <p>1) 인적자원운용</p> <p>나)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 지원 - <u>학교회계직원맞춤형복지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지속적 업무에 1년 이상 근로한 자(계속근로 1년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 지원금액 : 기본점수 150p(15만원)+근속점수 10p~100p(1만원~10만원)(표 생략) ▶ 집행방법 : 학교회계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계획, 교육협력과-2161(10.11.17)호 참조 	<p>다. 예산편성 내역 및 기준</p> <p>1) 인적자원운용</p> <p>나)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복지비 지원 - <u>대상: 학교회계직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지속적 업무에 1년 이상 근로한 자(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연 15만원 ▶ 집행방법 : 「학교회계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계획」 참조 	<p>20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회계직원 맞춤형복지비 지원 확대 - 교육협력과-2161(10.11.17) ○ 2011. 학교회계 정책, 단위사업 구분 변경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 재정과-3799, 10.11.1호와 관련

구 분	페이지	2011년도	2010년도	사 유
V.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기준 4. 세출 예산	20	<p>다. 예산편성 내역 및 기준</p> <p>2) <u>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u></p> <p>가) 급식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소(실) 운영, 우유 유·무상 공급비 등 학교 급식 운영을 위한 사업비 - <u>급식운영비</u> : 급식소모품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 - <u>급식기구화충비</u> : <u>오븐기</u> 소독기, 식기세척기, 아래 철단기 등 ○ 영양사 조리종사원 등 급식 관련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 <u>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제 사업비</u> 	<p>다. 예산편성 내역 및 기준</p> <p>2)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u>직접교육경비</u>)</p> <p>가) 급식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급식운영을 위한 급식종사원 인건비, 급식재료 구입비, 급식실 일반운영비, 급식기구 화충비 ○ 학생 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노후급식시설 교체비 (수리비) 등 제 사업비 ○ 학생 우유 단체 유·무상 공급 사업비 <신설> 	<p>급식실 일반운영비, 급식기구 화충비 등 급식실 운영을 위한 학교 자체 예산 편성 유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회계 재정분석 지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직접교육경비</u> : 기본적 교육활동만 해당 ○ 2011. 학교회계 정책, 단위사업 구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3799, 10.11.1호와 관련
V.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기준 4. 세출 예산	20	<p>다. 예산편성 내역 및 기준</p> <p>2) <u>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u></p> <p>다) 보건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약품구입</u> 등 보건실 운영 제 사업비 <삭제> ※ 보건실현대화는 단위사업 : 교육여건 개선에 편성 	<p>다. 예산편성 내역 및 기준</p> <p>2)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u>직접교육경비</u>)</p> <p>다) 보건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약품구입</u>, 보건실 현대화 등 보건실 운영 제 사업비 ▶ 보건실내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공기 살균기 구입비 등 계상 	<p>신종플루 등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보건실 공기살균기 구입은 단위학교의 자율적 재정 운영에 따라 예산편성 여부를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회계 재정분석 지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직접교육경비</u> : 기본적 교육활동만 해당 ○ 2011. 학교회계 정책, 단위사업 구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3799, 10.11.1호와 관련
V.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기준 4. 세출 예산	21	<p>다. 예산편성 내역 및 기준</p> <p>3) 기본적 교육활동(직접교육경비)</p> <p>가) 교과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충과정 운영/기초학력지도/교내 교과협의회/영어 보조교사 운영 등 교과활동 관련 제 사업비 - <u>기초학력지도</u> : 초·중·고 학력향상 및 기초학력 향상교실 지원 관련 활동 제 사업비 	<p>다. 예산편성 내역 및 기준</p> <p>3) 기본적 교육활동(직접교육경비)</p> <p>가) 교과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충과정 운영/기초학력지도/교내 교과협의회/영어 보조교사 운영 등 교과활동 관련 제 사업비 <p><신설></p>	<p>단위학교 이관 및 통합배분사업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기초 학력 신장 ○ 학력향상지원비 학교회계 자체편성 운영(2011년부터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지원) ○ 2011. 학교회계 정책, 단위사업 구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3799, 10.11.1호와 관련

구 분	페이지	2011년도	2010년도	사 유
V.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기준 4. 세출 예산	23	<p>다. 예산편성 내역 및 기준</p> <p>5) 교육활동 지원</p> <p>라) 교육여건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결상구입 및 교체, 사물합교체, 칠환수리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품(교구) 확충 및 교체 - 교직원PC교체, 책결상구입, 사물합교체, 칠환교체, 교실소규모수선, 보건실·급식실·도서실·과학실 현대화 등 - 교단선진화용교육기자재(교육용PC 및 교단선진화용 영상기기) 구입 	<p>다. 예산편성 내역 및 기준</p> <p>5) 교육활동 지원</p> <p>라) 교육여건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현대화, 과학실 현대화 사업 등 교육관련 시설 확충비 	<p>단위학교 이관 및 통합배분 사업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단선진화기기, 교육용 컴퓨터 학교회계 자체편성 운영 (2011년부터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지원) ○ 2011. 학교회계 정책, 단위사업 구분 변경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 재정과-3799, 10.11.1호와 관련 <p><신설></p>
V.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기준 4. 세출 예산	28	<p>다. 예산편성 내역 및 기준</p> <p>6) 학교 일반운영</p> <p>라) 학교운영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제 사업비 	<신설>	<p>2011학년도 학교회계 정책, 단위사업 구분 등 변경에 따라 세입·세출 내용 전면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 재정과-3799, 10.11.1호와 관련
V.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기준 4. 세출 예산	28	<p>다. 예산편성 내역 및 기준</p> <p>6) 학교 일반운영</p> <p>마) 학부모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학교참여를 위한 학부모회 지원 및 자녀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등 학부모 지원 제 사업비 ▶ 학부모 자원봉사 동아리 운영, 학부모 상담 활동, 모니터링 활동 학부모교육 등 학부모 활동 지원을 위한 제 반 경비 	<신설>	<p>2011학년도 학교회계 정책, 단위사업 구분 등 변경에 따라 세입·세출 내용 전면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 재정과-3799, 10.11.1호와 관련 ○ 2011년 학부모 지원 관련 예산 편성 방향 통보 -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1321, 10.8.20호와 관련

구 분	페이지	2011년도	2010년도	사 유
V.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기준 5. 예산의 집행 기준	29	<p>가. 물품구매 · 계약</p> <p>1) 수의계약내역의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장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u>월별 수의계약 내역</u>을 시교육청 및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대상 · 방법 등은 회계예규 및 지침 등에 따른다. 	<p>가. 물품구매 · 계약</p> <p>1) 수의계약내역의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장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관할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대상, 공개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추진계획, 복지재정과-10067(09.6.25)」에 따른다. 	수의계약내역 공개 범위 및 방법 변경 ○ 복지재정과-100, 10.9.3호와 관련
VI. 행정사항 2.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30	<p>가. 학교운영비 <u>이관 · 통합 배분 확대 및 목적사업비 감축</u></p> <p>1) <u>단위학교 이관사업 확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단선진화기기, 교육용 컴퓨터 보급, 교원자율연수비, 학력향상지원비 ※ 학교회계 자체 편성 운영(2011년부터 학교기본 운영비 증액 지원) <p>2) <u>학교운영비 통합배분사업 확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운영비지원, 과학실험보조원인건비, 깨끗한학교만들기, 운동부지도자인건비, 학교급식비정규직인건비, 학교급식운영비지원, 초등돌봄교실운영비지원, 교무업무보조원인건비 등 학교운영비로 교부 ※ 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로 교부 	<p>가. 학교운영비 총합 배분 확대 및 목적사업비 비중 감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비중을 30% 이내로 감축 계획 - 방과후학교운영, 학교급식 운영, 교단선진화기기구입, 비정규직인건비, 유아교육비지원 등 학교운영비로 교부 	단위학교 이관 및 통합배분 사업 확대
VI. 행정사항 3. 학교회계 재정분석 실시	30	<p>가. <u>2010학년도 학교회계 결산</u>시부터 실시 예정</p> <p>나. 학교회계 분석 체계화에 따른 학교회계 관리 철저 (그림 생략)</p>	<신설>	학교회계 재정분석 실시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2221, 10.9.3호와 관련

학교회계 관계 법령



학교회계 관계 법령

- I. 초·중등교육법
- II. 인천광역시 공립학교 회계 규칙

학교회계 관련 법령

I.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5438호】

제30조의 2 (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32조제7호의 학교운영지원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 및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6. 사용료 및 수수료
7. 이월금
8. 물품매각대금
9. 기타 수입

③ 학교회계는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④ 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⑤ 학교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 3 (학교회계의 운영) ①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②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교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공립학교 회계 규칙

제정 2006. 5. 1. 공포 교육규칙 제439호

전부개정 2010. 2. 22. 공포 교육규칙 제491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립학교 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학교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제4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5조(회계의 방법) 학교회계는 복식부기에 따른다.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통합운영학교의 학교회계)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통합 운영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예산

제8조(예산총계주의)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편성지침)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알린 후 학교회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알릴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지정한 자율학교의 예산편성 기본지침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전입금의 교부계획 통보) ① 교육감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30조의2제2항1호에 따른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11조(예산안의 편성) ① 학교의 장은 제9조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 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③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세입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은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13조(예산안 심의) ①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 목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4조(추가경정예산) ① 학교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절차 등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①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예비비는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의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인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예산의 전용) ① 학교의 장은 인건비, 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 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간 목의 금액은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목에 서의 전용은 할 수 없다.

② 제16조 및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0조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분명히 밝히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계속비) ①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명시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3 장 결산

제20조(예산회계의 결산) ①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예비비사용 내역(별지 제1호서식)
2.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별지 제2호서식)
3. 계속비 내역(별지 제3호서식)
4. 이월경비 내역(별지 제4호~제6호서식)
5. 그 밖에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붙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재무보고서 결산심의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해당 사업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정산 후 10일 이내에 사업추진 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 4 장 수입

제24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제25조(전입금의 교부) 교육감은 제10조에 따른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분기별로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법 제30조의2제2항제6호에서 "사용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24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학교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에 따라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 ② 법 제30조의2제2항제6호에서 "수수료"란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 수입을 말한다

제27조(물품매각대금) 법 제30조의2제2항제8호에서 "물품매각대금"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을 말한다.

제28조(기타 수입) 법 제30조의2제2항제9호에서 "기타 수입"이란 예금이자, 실습물 매각대금,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 등을 말한다.

제29조(징수기관과 징수의 결정·고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 결정할 경우 해당 세입이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로써 알려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공고,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① 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② 출납원은 해당 학교 행정실장으로 하되, 해당 학교에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41조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1조(과오납금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 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은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2.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②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수납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납금 중에서 반환할 수 있다.

제32조(미수납액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제 5 장 지출

제33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수행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4조(지출의 원칙) ① 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 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 ② 출납원은 「민법」에 따라 학교의 채무와 학교 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 ③ 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할 때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으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제38조에 따른 개산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6조(증빙서류) ①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 세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지출결의서(교육감이 경비의 성질상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서식)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는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서명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그 밖에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제38조(개산급)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로 한정한다)
 2.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그 밖의 체험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 ② 개산급을 받은 사람은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임시출납원의 임명)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 휴가나 장기 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 6 장 세입세출외현금 및 장부·서식 등

제4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그 밖의 잡종금
-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41조(금융기관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42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교육감에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 :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0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출부

제44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제43조의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45조(지정정보처리장치에 따른 회계의 처리 및 관리) ① 학교회계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따른 자료를 보존·관리할 경우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 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 규칙」에 따르고, 출납원의 직인의 인영내용, 규격 및 자체는 별표를 따른다.

- 제47조(예산·결산 등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기타 서식) 교육감은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학교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4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및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2006. 5. 1 교육규칙 제4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22 교육규칙 제491호)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별표]

출납원의 직인의 인영내용, 규격 및 자체(제46조 제3항 관련)

인영내용	○○학교회계출납원
규격	1.8센티미터의 정방형
글자체	한글 전서체

[별지 제1호서식]

예비비사용명세서

(단위 : 원)

과 목					총사업비 (예산현액)	예비비 지 출 결정액	예비비 사용액	예비비 사 용 잔 액	지출 결정일	예비비 사용내역	비고
정 책	단 위	세 부	항 목	원 가 목							

[별지 제2호서식]

세출예산 이(전)용명세서

(단위 : 원)

과 목					이(전)용액		이(전)용사유
정책	단위	세부	항목	원가목	증	감	

[별지 제3호서식]

계 속 비 조 서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 분	총 액	전전회계연도이전			전회계연도			당 회 계 연 도	해 회 계 연 도	○○ 회 계 연 도	○○ 회 계 연 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당초												
수정												
계												

(주) 전회계연도란까지는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잔액을 기입하고 당해 회계연도란부터는 계획액만을 기입함.

[별지 제4호서식]

명시이월비명세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지출잔액 ③	이월액 ④	불용액 ①-②-④	사 유
정 책	단 위	세 부	항 목	원 가 목						

[별지 제5호서식]

사고이월비명세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 현액①	지출원인 행위액②	지출액 ③	지출잔액 (④=②- ③)	이월액 ⑤	불용액 ①-③-⑤	사 유
정 책	단 위	세 부	항 목	원 가 목							

[별지 제6호서식]

계 속 비 이 월 명 세 서

(단위 : 천원)

과 목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 현액 ①	지출액 ②	이월액 ③	불용액 ①-②-③	사 유
정 책	단 위	세 부	항 목	월 가 목							

[별지 제7호서식]

정 수 부

장 관 항 목

(단위 : 원)

년 월 일	적 요	예산액	정 수 결정액 ①	수납액 ②	불 납 결손액 ③	미수납액 ①-②-③

[별지 제8호서식]

징수결의서

회계연도	학교회계	증 제 호			
발 의		장			
고지서발행		관			
납 입 기 한		항			
징수부등기		목			
고지서번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일금</td> <td>원정</td> </tr> </table>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납부자 주소 성명(상호)					
적 요 (산출근거)					
결재		협조		참조	
직위	이름	승인일자	직위	이름	승인일자

[별지 제9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회계연도 학교회계

발의일자		정책사업		청구일자	
원인행위부등기		단위사업		발의일자	
계약일자		세부사업		지출부등기	
준공/납품일자		목		결의번호	
검수일자		세목		지급명령번호	
계약/품의번호		원가목		지출구분	
원인행위번호		지급방법		물품(재산) 대장등기	
건명					
적요		채주		공급가액	₩
	수령인명 (실거래처)			부가세액	₩
	사업자번호			합계	₩
	주민번호			소득세	₩
	주소			주민세	₩
				기타공제	₩
원인행위액	₩	예금주		공제합계	₩
기지출액	₩	지급계좌		채주지급액	₩
금회지출액	₩	오른쪽 금액을 영수함.			지급액
지출잔액	₩				일금 원정 ₩

지출결의 결재정보

결재			협조			참조			
직위	이름	승인일자	직위	이름	승인일자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원인행위 결재정보

결재			협조			참조			
직위	이름	승인일자	직위	이름	승인일자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예산세부항목 명세서

정책사업 목	단위사업 세목	세부사업 원가통계비목	원인행위금액	지출결의금액
합 계				

물 품 (구매, 수선, 임차) 명세서

G2B 코드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용도(적요)

공사재산명세서

유형	자산(재산)명	품명		수량	단위
단가	금액	소재지	지번	관련교과	용도

재산임차명세서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임차기간	소재지	지번	용도(적요)

일반수령인명세서

수령인구분	수령인명	내용		지급액	비고	확인

학생지원명세서

학년/반	학생	지급액	납입금	차수	비고	확인

일반학생명세서

학년/반	학생	내용	지급액	관련교과	비고

보수일용명세서

수령인명	소득구분	강사료	일용임금	소득세	기타	지급예정액
		원고료	기타수당	주민세	공제금액	실지급예정액

용역명세서

용역명	수량	단위	단가	금액	용도(적요)

서비스용역명세서

서비스용역명	거래처	지급예정일자	지급예정금액	금액	용도(적요)

급식명세서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용도(적요)

여비명세서

출장자	출장구분	출장지	출장기간	교통비	숙박비	그외금액	금회지급액
	출장목적			일비	식비	계좌번호	

보수인건비명세서

수령인명	수당총액	공제총액	지급금액

공제명세서

수령인명	공제구분	공제내역	실수령인명	지급계좌	공제금액

승낙사항 (공사집행)

- 규격서 및 도면에 의하여 착공하고 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 설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에 증감이 생긴 때에는 명세서상의 단가로 증감하고 그단가에 의하기 어려운 때에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의한다.
- 기한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계약대상자는 그 공사 준공일로부터 ()년간 그 공사의 공종별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자 :

승낙사항 (물품구입)

- 1) 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 중 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여야 한다.
- 2) 납품기한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대가의 1000분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 경과 후 ()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5)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승낙사항 (용역집행)

- 1) 계약사항에 의하여 착공하고 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 2) 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에 증감이 생긴 때에는 명세서상의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운 때에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의한다.
- 3) 기한내에 용역을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4) 계약대상자는 그 용역 준공일로부터 ()년간 그 용역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 5)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 (주) 1. 승낙사항은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작성함
2. 구입물품(운반물품·공사)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도 계약서·명세서, 견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명세서 기록을 생략할 수 있음

[별지 제10호서식]

현금출납부

년 월 일	적 요	채주(납부자)	수입액 ①	지출액 ②	잔 액 ①-②

[별지 제11호서식]

지 출 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